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 매뉴얼

2026. 1

중소벤처기업부

일러두기

1. 매뉴얼의 목적

- 본 매뉴얼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25.11월)**」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단순 규제 해소 구역이 아닌 지역 주도의 '**실질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작됨
- 특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1:1 전담관제 운영, ▲사업 실현가능성 사전검토, ▲운영성과 실적 검증** 등의 세부 절차를 명시하여, '본부(정책총괄) - 지방중기청(밀착지원) - 지자체(책임운영)'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둠
- 아울러, **특화사업자**(지자체, 민간기업 등)에게는 **단계별(지정-운영-해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무 이해도와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2. 관련 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하위 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고시)**」
- 「**2026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 사업 기본계획**」

3. 용어의 정의

-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법'**
  ② 위 법 시행령 → **'영'**
  ③ 위 법 시행규칙 → **'규칙'**
  ④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고시) → **'규정'**
  ⑤ 지역특화발전특구 → **'특구'**

Contents

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 1

Ⅱ. 기관별 역할 및 협력 체계 ····· 4

Ⅲ. 특구 신규지정 절차 ····· 7

Ⅳ. 특구 계획변경·지정해제 절차 ····· 21

Ⅴ. 특구 선정·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 30

Ⅵ. 특구 운영상황조사 ····· 33

Ⅶ. 특구 운영성과 평가 ····· 35

Ⅷ. 참 고 ····· 37

1. 관련 규정(법령 및 고시)

(1) 「지역특구법」(특화특구 부분) ····· 37

(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25.4.25. 개정) ····· 121

2. 주요 현황

(1) 지역특화특구 규제특례 현황(총 129개) ····· 129

(2) 시·도별 지역특화특구 지정 현황('26.1월 기준) ····· 140

3. 유관기관 연락처 ····· 144

4. 실무 서식 및 작성 예시(※ 각 서식별 예시 포함)

(1) [지방중기청] 특구계획 사전 검토의견서 ····· 146

(2) (지자체) 지방중기청 사전 검토결과 반영 내역서 ····· 152

(3) (지자체) 특구 지정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자가진단용) ····· 156

(4) (지자체) 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지형도면 기준 포함) ····· 162

(5) [지방중기청] 특구 관리 내역 ····· 188

(6) (지자체) 특구 지역협의회 운영현황 ····· 193

(7) [지방중기청] 특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현장 점검용) ····· 195

(8) [지방중기청] 시정 및 개선 권고서(행정지도용) ····· 201

(9) (지방중기청) 특구 운영성과 검증 및 검토의견서 ····· 205

(10) (지자체) 특구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양식(부진 특구용) ····· 209

업무 매뉴얼 제·개정 내역

시기	쪽번호	개정 전	개정 후	사 유
’23.8월	-	최초 제정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이해도 제고
’25.5월	p.18	-	총사업비 관리 기준 추가	일관된 관리기준 확립
	p.19	-	지역협의회 운영시 이행의무 추가	관련 고시 개정
	p.101~113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개정본 반영	관련 고시 개정
	p.109	-	지형도면 작성 기준 추가	법령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필요
	p.111	-	규제특례 활용사례 추가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이해도 제고
‘26.1월	全文	절차 중심 나열	매뉴얼 전면 개편 * 「특구제도 개편방안 (’25.11.)」 및 후속 조치 반영	제도 운영 패러다임 전환 * 획일적 관리→유형별 육성, 본부 중심→현장 밀착
	별책 발간	매뉴얼 내에 규제특례 활용사례 수록	규제특례 활용사례 분권화 * 본권(매뉴얼)과 별책(활용사례집)으로 분리 발간	매뉴얼 경량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1 제도 일반 현황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자체**(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특구 지정절차 >

지정 신청·검토	관계행정기관 협의	실무위원회	특구위원회	특구지정 고시
신청서 검토 (필요시 보완)	규제특례 적용검토	안건 사전검토, 관계기관 추가 협의	특구지정 심의·의결	특구지정 관보고시 및 통보
지자체→중기부	중기부↔관련부처	중기부↔관련부처	특구위원회	중기부→지자체 등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상 **총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지정 현황 : 현재 171개 특구*(135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6.1. 기준)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30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9개 특구가 해제·통합

< 지역별 특구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	6	5	2	3	1	4	19	13	16	16	12	29	20	13	2	**171**

2 新 정책 방향

□ 비전 및 목표

○ (비전)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구현”

- 기존의 획일적 관리와 단순 규제 해소를 넘어, ‘**유형별 맞춤 육성**’과 ‘**성과 기반 지원 패키지**’로 지역 주도의 **실질적 성장거점**으로 **도약**

○ **(목표) 특화특구**의 **체질 개선**(부가가치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자생적 성장 기반** 확립

□ 2-Track 맞춤형 육성 체계

○ 지역 산업 특성과 여건에 따른 **2-Track(고도화·도약) 육성 전략** 가동

구 분	Track 1. 고도화(부가가치 제고)	Track 2. 도약(지역활력 회복)
대 상	중규모 · 전통산업 群	소규모 · 소멸위기 지역 群
특 징	기반은 갖추었으나 가치사슬 단절 등으로 스케일업(Scale-up)이 필요	인구 감소 및 산업 침체로 민간 활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수혈이 시급
핵심 전략	**[Value-Chain 완성]** 가치사슬(생산-가공-유통) 연결 및 고부가가치화	**[민간 주도 기획]** 민간 기획자와 협업하여 로컬 랜드마크 조성
지원 방식	① **(정밀 진단)** 지방중기청·전문가 합동 밸류체인 진단, 민간 기획자 매칭 지원 ② **(패키지 연계)** 진단 결과에 따라 중기부·타부처 공모사업 연계	① **(파트너 매칭)** 로컬크리에이터·앵커기업 연결 ② **(BM 수립)** 상권 육성사업 등 연계 지원

□ 추진 체계 및 주체별 역할

○ 본부 중심 행정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현장 밀착 지원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3각 협력 체계**로 개편

주 체	핵심 역할	주요내용
중기부 본부	**기획·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법령)** 정비 • **특구위원회 운영 효율화** (상반기: 제도·정비 / 하반기: 지정·평가) • 인센티브(메뉴판 사업 연계) 및 페널티(직권해제) 정책 확정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밀착 지원**	• **1:1 전담관제 운영 :** 관할 특구 상시 모니터링 및 애로 발굴 •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 비즈니스지원단 등 전문가와 함께 특화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 • **현장 점검 :** 운영상황 조사 및 성과평가 실적 1차 검증 (서면·현장)
지자체	**성과 창출**	• **민간 주도 기획 :** 민간 전문가와 컨소시엄 구성, 공동 기획 • **책임 운영 :**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노력, 지역협의회 운영 • **투명한 보고 :**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증빙자료 관리

Ⅱ 기관별 역할 및 협력 체계

1 중기부 본부 : 정책 기획 및 제도 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 매년도 특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법령 및 지침(매뉴얼)** 제·개정
- **제도 개편방안**(유형별 육성, 성과 중심 관리 등) 수립 및 이행 점검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운영(연 2회, 이원화)**

- **(상반기) 제도 운영방향** 정립, 기존 특구의 **전략적 정비**(내실화)
  ※ 부진 특구의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 졸업 권고 등 기존 특구 사후관리 주력
- **(하반기) 신성장 동력** 확보, 엄격한 **성과관리**(구조조정)
  ※ 타부처 공모사업 연계, 성과평가 결과 및 직권 지정해제(퇴출) 심의

○ **「특화특구 전략협의체」 구성 및 총괄 운영**

- **(기획·운영)** 중앙-지방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인 **전략협의체**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회의 주재**(연 1회 이상)
- **(구성)** 본부(특구단장), 지방중기청(청장), 지자체(부단체장) 등
- **(기능)** 현장 기반 제도 개선안 도출, 중앙-지방간 실질적 협력 과제 발굴, 이견 조정 등 **거버넌스 총괄**

< 특화특구 전략협의체 운영방식(안) >

주 체	역 할
지자체	○ 특구 운영상황 보고 및 지원 필요사항 건의 ○ 제도 개선과제 및 지역 업계 수요 발굴
중기부	○ 지자체 등 현장의견 수렴(지방중기청), 제도 개선방안 등 마련(본부)
협력활동 (지자체+중기부)	○ 관계부처·국회 등에 제도 개선, 지원 강화 위한 공동협력

○ **상벌(賞罰) 확정**

- **(인센티브) 우수특구**(탁월·우수 등급) 대상 **재정지원**(메뉴판 사업) 연계 확정
- **(페널티) 부진특구**(2회 연속 등)에 대한 **퇴출**(직권해제) 여부 최종 의결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현장 밀착 지원 및 1차 정량평가

※ **(역할 전환)** 기존 지자체 단독 계획 수립·운영 방식에서 탈피, 지방중기청 중심의 '권역별 밀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획부터 운영까지 全주기 밀착 지원

○ **「1:1 전담관제」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관할 특구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실 징후 포착 시 **선제적 컨설팅** 및 **시정 조치** 수행

○ **全주기 기획 및 컨설팅 지원**

- **(계획수립)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로 특화사업의 **지역특화성, 실현 가능성**을 선제적 **검증**하고, **전문가 연계**로 **사업 고도화** 지원

- **(운영지원)** 정부 지원사업 연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제공

○ **1차 정량평가(전문기관 검증 결과 검토 및 확정)**

- **(검증 관리) 평가 전문기관**의 **'데이터 교차 검증 결과'**를 토대로 **특이사항 확인 → 지자체 소명**에 대한 **최종 판단**

- **(선별 점검)** 전수 조사는 지양하고, **데이터 불일치**가 **과다**하거나 **허위 실적**이 **의심**되는 **특구 중심**의 **'타겟형 현장 점검'** 실시

- **(최종 제출) 정량평가 점수 확정**(승인)과 함께, 정량 수치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역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검토 의견서'**를 **본부**에 **제출**

○ **「특화특구 전략협의체」 참여 및 안건 발굴**

- **(현장 가교)** 관할 지자체의 **특구 운영상 애로,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필요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

※ (지방중기청) 특구 간담회 결과는 '특구 관리 내역(간담회, 본 매뉴얼 서식5)'에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반기별)

- **(참여·협력) 협의체 위원**(지방중기청장)으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대변**하고, **본부**의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전파**하는 **가교 역할** 수행

3 지방자치단체(특화사업자) : 책임 운영 및 성과 창출

○ **민간 주도형 특화사업 기획·발굴**

- 관(官) 주도 방식 탈피, **민간**(앵커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익창출형 특화사업 모델**(BM)' 기획
- 지역 내 **유휴·특화자원**을 활용한 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 추진

○ **성과목표(KPI) 관리 및 보고**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 **매년도 운영성과 보고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3월 말)

○ **현장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전략협의체 참여)** 신설되는 '**중앙-지방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본부-지방중기청-지자체)'에 참여하여 **협력과제** 및 **실행방안** 논의
- **(현장 수요 발굴) 지방중기청 '1:1 전담관'**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신규 규제특례 수요,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건의**

○ **「특화특구 전략협의체」 정책 제안 및 안건화**

- **(정책 건의) 협의체 위원**(부단체장)으로서 **특구 현안**을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건의**
- **(안건화 추진) 지방중기청**과 **협력**하여 **현장 애로사항**의 **논리**를 **보강**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여 정식 안건으로 상정

Ⅲ 특구 신규지정 절차

1 (총괄) 특구 지정절차 흐름도

가.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전 (추진주체 : 지방중기청, 지자체)

* ( ) : 필요시 거쳐야 하는 절차(필수사항 아님)

특구계획(안) 수립 * 근거 : 법 제5~6조

(지자체) 성과중심 기획 : 기초지자체장(단독·공동)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과창출형 계획 수립

※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지자체에 특구계획 제안 가능(60일 이내 지정 필요성 검토)

⇓

지방중기청 사전 검토

(지방중기청)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 지방중기청·전문가가 특화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1차 검증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근거 : 법 제62조

(지자체) 정합성 검토 :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적용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사전 심의

*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중기부 장관에 제출하여 승인 필요

⇓

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공고기간 : 20일 이상) * 근거 : 법 제7조

(지자체) 정보 공개 : 대상지역, 사업자, 사업내용, 규제특례, 재원조달 등 핵심 내용을 투명하게 공고

⇓

(특화사업자 지정) * 근거 : 법 제8조

(지자체) 주체 확정 : 공고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민간·공공 사업자를 지정하고 투자 실행력 확보

※ ①신청 접수 후 30일 내 결정·통보, ②민자유치 필요성 인정 시 지정 이후 선정 가능(계획변경)

⇓

특구계획안 열람(공고 6일 이후 14일 이상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 근거 : 법 제7조

(지자체) 의견 수렴 : 주민, 기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갈등 요인 사전 파악

⇓

주민 공청회(개최 14일 이전에 공고) * 근거 : 법 제7조

(지자체) 공론화 : 공청회를 통해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

※ 계획안 공고기간 후반부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최 14일 전 공고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근거 : 법 제7조

(지자체) 지지 확보 : 지방비 매칭 및 조례 제정 등 향후 절차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

※ 법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이후가 바람직

⇓

특구 지정 신청(지방중기청 사전 검토 완료 후) * 근거 : 법 제5조

1. **(지방중기청)** 최종 확인 : 사전 검토 결과 반영 여부 확인 등 계획의 완결성 최종 점검
2. **(지자체)**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에는 계획 통보)

나. 특구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추진주체 : 본부, 지방중기청, 지자체)

* ( ) : 필요시 거쳐야 하는 절차(필수사항 아님)

특구 지정 신청(중기부 ↔ 지자체) * 근거 : 법 제11조

1. **(중기부)** 정밀 검토 : 지정신청서 및 '사전 진단 결과 반영 여부', '민간 참여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2. **(중기부)** 보완 요청 : 미비 서류, 실현 가능성 부족사항 등 보완 요청(보완기간은 회신기한에서 제외)

※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정 통보(단, 45일 연장 가능)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근거 : 법 제10조

(본부) 부처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해당 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

⇓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부 ↔ 관계행정기관) * 근거 : 법 제11조

1. **(중기부)** 협의 요청 :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
2. **(관계기관)** 의견 제출 : 20일 이내 의견 회신(미제출 시 협의 간주)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1차에 한해 10일 범위 연장 가능)

⇓

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근거 : 법 제9조

(본부) 안건 검토 : 법령상 필수포함사항 준수 여부 및 규제특례 타당성 종합 검토

※ 특구계획 포함사항 검토 : ①명칭·위치·면적, ②필요성, ③특화사업 내용, ④규제특례 세부내용, ⑤재원조달방법, ⑥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등

⇓

특구 실무위원회 개최(중기부 ↔ 실무위원) * 근거 : 법 제12조

(실무위) 안건 사전검토: ①특구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안건 검토, ②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

※ 실무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필요시) 및 정리 수행

⇓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중기부 장관) * 근거 : 법 제13조

1. **(위원회)** 심층 심의 : '유형별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정 여부 의결
2. **(본부)** 지정 시기 : 신규 지정 안건은 원칙적으로 '하반기 위원회'에 일괄 상정

※ 심의 고려사항: ①지역 특성·여건 적합성, ②규제특례 연관성, ③재원 확보, ④투자유치 가능성, ⑤국민·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⑥도시·군 기본계획 적합성 등

⇓

특구 지정·고시 * 근거 : 법 제11조

1. **(본부)** 고시 및 통보 : 관보에 지정 고시(특구계획 승인 효력) 및 지자체 통보
2. **(지방중기청)** 전담관 지정 : 지정된 특구에 대해 '1:1 전담관'을 지정하여 사후관리 착수
3. **(지자체)** 열람 및 조례 : 통지받은 결과를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 조치하고 필요시 관련 조례 제정

* ※ (중기부) 관보 고시 → (중기부) 지자체 통보 → (지자체) 주민 열람

⇓

특구 운영성과 보고(지자체) 및 평가(중기부) * 근거 : 법 제23~24조

1. **(지자체)** 성과 보고 : 매년 1~12월 운영성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익년 3월 말까지)
2. **(지방중기청)** 교차 검증 : 지자체 제출 실적에 대한 데이터(서면) 검증 및 현장 실사 수행
3. **(본부)** 평가 및 환류 : 우수특구 '인센티브', 부진특구 '퇴출' 시행

2 (1단계) 특구계획(안)의 수립(법 제 5·6·9·10조)

가. 수립주체(법 제5·6조)

○ **(원칙) 통상적**으로 **단일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나, **공동특구** 지정 추진시 **복수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가 수립 (법 제5조제1·2항)

※ 필요시 외부업체에 관련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하기도 함

○ **(부가사항) 민간기업·법인·단체·개인**은 지역의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특구계획 제안 가능**(법 제6조제1항)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 신청**시 **계획 제안자**는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봄(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답변**하여야 함 (영 제4조제1항)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구계획에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영 제4조제2항)

<민간 제안 시 검토 고려사항>

①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②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의 발생 가능성
③ 재원확보계획
④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검토 및 서류 구비(법 제10조)

○ **(1단계 : 자체 판단) 특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를 검토하여, 아래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자체 판단**하여야 함

* **(제외 기준 1 : 소규모 계획)** 특구 전체 면적이 소규모(도시지역 6만㎡ 미만, 비도시지역 1만㎡ 미만 등)인 경우(비고 3호 가목)
(제외 기준 2 : 개발행위 미수반)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별도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비고 3호 다목)

(제외 기준 3 : 소규모 개발) 특구 면적과 상관없이, 계획 내용 중 실질적인 개발행위(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비고 3호 바목)

○ **(2단계 : 기후부 질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80)에 **질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정**

⇨ **(유형별 조치) 결과**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특구계획**에 **포함**

- **(대상 아님) 대상 제외 사유**(면적 산출 근거, 개발행위 미수반 사유 등)가 **명시**된 '**자체 검토보고서**(내부결재 등)'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질의 회신 공문**(사본) 첨부

- **(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첨부

다.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법 제9조제1항)

※ 중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 제출 요청 가능(영 제3조)

①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② 특구지정의 필요성
③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④ 특구 토지이용계획*
* 특구법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⑤ 특구 적용 규제특례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세부 자료
⑥ 재원조달방법
⑦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⑧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⑨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⑩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6조)>

①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및 시행기간
②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법 제7조제1~2항)
③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
④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특구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
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법 제62조제1항)

3 (2단계) 특구계획 실현가능성 사전 검토

<(참고) 단계별 주체 및 역할 구분>

◆ **(지방중기청 : 실현 가능성 검토)** 지역특화 산업 연계성, 재원 확보, 운영 지속성 등
◆ **(본부 : 적법성 검토)** 규제특례 검토, 부처 사전 협의, 계획서 필수요건 등

가. [기획 내실화] 사업 타당성 사전 검증 및 민간 주도 모델 수립 (지방중기청-지자체)

※ 2026년부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진단'과 '민간 주도 기획'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 **(사전 진단) 지자체**는 **특구계획(안)** 수립 후 관할 **지방중기청**과 **협의**하여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검증을 선행

- **(지방중기청 역할) 전문가**(비즈니스지원단 등)와 함께 **지자체 특화사업 계획**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지방중기청) 현장점검 필요시 '특구 관리 내역(현장점검 유형1, 본 매뉴얼 서식5), 지자체에 검토 결과 통보시 '특구계획 사전 검토의견서(본 매뉴얼 서식1)'를 활용

- **(지자체 역할) 지자체**는 **지방중기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필요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

※ (지자체) 사전 검토 결과를 특구계획에 반영 시 '지방중기청 사전 검토 결과 반영 내역서(본 매뉴얼 서식2)'를 활용하여 조치사항을 작성

○ **(민간 주도 기획) 지자체**는 **관(官) 주도 인프라 조성 계획**을 **지양**하고, **민간**(기업,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익창출형 특화사업 모델(BM)** 수립

- **(내용)** 단순 특산물 생산을 넘어, **체험·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융복합 모델** 등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 방안 제시

- **(확약) 실질적 투자**를 수행할 **민간 특화사업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투자 의향**(확약서 등) **확인 권장**

나. [규제 타당성 검토] 법적 요건 확인 및 제도 정합성 점검 (중기부 본부-지자체)

○ **(목적)** 1단계를 거쳐 수립된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본격 행정절차(공고·공청회) 이행 전 **법적 요건, 규제특례 실현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

○ **주요 검토사항**

- **(법적 요건 확인)** 법 제9조에 따른 **특구계획**의 **필수 포함사항*** 준수 여부 및 **작성 충실도 점검**

* ①명칭·위치·면적, ②필요성, ③특화사업 및 사업자, ④규제특례 세부내용, ⑤재원조달방법, ⑥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등

- **(규제특례 타당성)** 신청 규제특례가 **특화사업 추진**에 **필수적**인지(인과관계), **법령상 허용범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다. [부처 협의] 관계 행정기관 사전 의견 조회(중기부 본부)

○ **(사전 회람)** 토지이용 규제 등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획 공고 전에 **중기부**(본부)가 **관계 행정기관**(실무위 구성)에 **계획안**을 **사전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

* **(예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계획 보완)** **지자체**는 중기부(본부) 및 관계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 보완**한 후, **3단계**(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 **(효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재공고, 절차 지연 등 행정력 낭비 방지

4 (3단계) 주민 등의 의견 청취(법 제7조)

가. 특구계획(안)의 공고(법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지정 신청시 **계획 주요 내용**을 그 지자체의 **공보** 또는 **신문**(인터넷 게재 포함)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함(법 제7조제1항)

-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 제5조제1항)

※ 공고 및 열람기간 등 법정사항 반드시 준수

- 공고된 **특구계획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영 제5조제2항)

※ 지자체장은 제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계획안 수정 등 조치를 해야 함

나. 공청회 개최(법 제7조제1항)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법 제7조제1항)

※ **(갈등 관리)** 1~2단계(사전진단·컨설팅)를 통해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BM)과 규제특례 내용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갈등 요인(환경, 재산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

○ **(절차) 공청회 개최시**에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함
(영 제5조제3항)

① 공청회의 개최 목적
②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③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④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법 제7조제2항)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지정 신청시 **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법 제7조제2항)

* (절차) 정기회·임시회 등 정식 회기 내 안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의회 내 간담회 등으로 대체 가능
(증빙) 원칙적으로 정식 의결서를 제출하되, 간담회 등으로 진행한 경우 청취 사실 및 의회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 명의 공문'을 필수적으로 첨부

※ **(협력 확보)** 특구 지정에 따른 지방비(매칭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향후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

※ **상기 절차(가~다)**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5 (필요시) 특화사업자의 지정 신청(법 제8조)

○ **공고된 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법 제8조제1항)

※ **(기업 유치)** 공고된 계획에 따라 실제 투자를 수행할 민간 특화사업자(앵커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함
(투자 확약) 지정 신청 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투자 확약서(LOI) 등을 제출하여 사업 참여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여 **통보**(법 제8조제2항)

※ **(재무 검증)** 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자금조달계획을 정밀 검토하여,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해야 함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시 제출서류(규칙 제2조제1·2항)>

① 신청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함)
②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③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④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필수 첨부>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 (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3) 신청지방자치단체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규칙 제2조제3항)

※ **(심사 중점)** 단순 참여 의향보다는 지역 산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으로서의 역량과 '수익창출형 특화사업 모델(BM)' 실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

<특화사업자 지정시 고려사항>

① 특구계획의 내용
② 신청자가 특구 내에서 「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③ 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

○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 결정시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규칙 제2조제4항),

- **특화사업자 지정 결정** 시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 해야 함(규칙 제2조제4항)

<특화사업자 지정 공고시 포함사항>

①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주소
②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③ 특화사업의 내용
④ 그 밖에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6 (4단계) 특구의 지정 신청(법 제5조)

가. 지정 신청 절차 및 요건(법 제5조제1항)

○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 진단 및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특구계획 및 신청서**를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

※ **(사전 이행)** 신청 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의 '특구 밸류체인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함
(특구명칭)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법)' 등과 구분 필요(법 제22조)

○ **(제출 서류)** 기존 지정신청서 외에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① (필수) 지방중기청 사전 검토결과 반영 내역서(본 매뉴얼 서식2)
② (필수) 특구 지정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본 매뉴얼 서식3)
③ (필수) 특구 지정(변경·해제) 신청서(본 매뉴얼 서식4)
④ (해당시) 민간투자 확약서(LOI) 또는 투자 의향서
⑤ (해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나. 광역지자체 통보 및 의견 수렴(법 제5조제3항·제4항)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신청 후 해당 **특구계획**을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의견이 있을 시 해당 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기부 장관** 또는 **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다. 심의 절차 및 기간(영 제7조)

○ **(처리 기한)** 지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1회**에 한해 **45일** 연장 가능

○ **(심의 절차)**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자체**에 **통지**

○ **(보완 요청)** 계획의 미비, 실현 가능성 부족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7 (5단계)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10·11조)

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 제11조)

○ **(중기부 : 협의 요청 및 조정)** 접수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

○ **(관계기관 : 의견 제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불가피**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

· **(기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부득이한 사유 시 1회, 10일 연장 가능)

· **(부동의 사유)** 관계기관장은 아래 '**규제특례 반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례 반영**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

<규제특례 반영 제외사유>

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③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법 제10조)

○ **(중기부 : 기후부 협의)** **지자체**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기후부 장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 완료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①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③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④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⑤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⑥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⑦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⑧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⑩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⑪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⑫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⑬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⑭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⑮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⑯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⑰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8 (6단계) 특구 실무위원회 검토(법 제12조)

가. 실무위원회 개최 및 안건 사전심의

○ **(개최) 관계 행정기관 협의**(5단계)가 **완료**되면,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보좌**하고 **상정 안건**(지정, 해제,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개최

※ (구성) 위원장(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및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 등 17명

○ **(역할 : 종합 사전검토)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특구계획 전반**에 대하여 **부처별 소관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사전 조율**

- **(기능)** 단순 규제특례 수용 여부뿐만 아니라, **특화사업**의 **타당성**, **재원 조달** 계획, **국토 이용** 계획 등 **특구계획 내용**이 **각 부처**의 **정책 및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

나. 검토 사항 및 조치(영 제12조)

○ **(검토 및 안건 상정) 실무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층 검토**하고, **지자체**가 그 **검토 결과**(수정·보완 의견)를 **반영**하여 **계획**을 **최종 확정**하면 **중기부**(본부)는 이를 **특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함

<실무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지정, 해제, 계획, 규제특례 등)
②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7단계) 특구위원회 심의·의결(법 제11·12·13조)

가. 위원회 심의 및 지정(최종 의결)

○ **(심의) 특구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정부·민간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최종 심의·의결**

○ **(지정 시기) 신규지정 안건**은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반기(10~11월)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처리**

○ **(심의 기준)** 법령상 고려사항 외에 '**민간 투자**의 **확실성**', '**유형별 전략**(고도화/도약)의 **적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매출·고용)'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적용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배석시켜 의견 청취 가능 (영 제10조)

나. 심의·의결시 고려사항(법 제13조, 영 제14조)

○ 위원회는 **다음 법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사항>

①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②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③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④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⑤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⑦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⑧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4조)>

①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②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③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④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⑤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⑥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10 (8단계) 특구 지정·고시(법 제11조)

가. 지정 고시 및 통보(법적 효력 발생)

○ **(중기부 : 고시) 위원회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 포함)함으로써 **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관보고시 내용(영 제7조제6항)>

①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③ 특화사업의 내용
④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⑤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⑦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⑧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⑨ 그 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자체 : 열람) 지정 통지**를 받은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특구 운영 조례** 제정

나.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 착수

○ **(지방중기청 : 전담관 지정)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정된 특구에 대해 **'1:1 전담관'**을 **즉시 지정**하여 **초기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지자체 : 성과관리)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연차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평가**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함(KPI 관리)

Ⅳ 특구 계획변경·지정해제 절차

◆ 특구 **계획변경(중대사항)** 및 **지정해제 절차**는 **신규지정 절차**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함(법 제16조제1항)

※ 다만, 주민 재산권 제한이 없거나 토지이용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주민 의견 청취 및 특화사업자 지정 절차 생략 가능

1 (경우1) 특구 계획변경(중대사항) 및 지정해제(법 제16조)

가. 지자체 신청에 의한 변경 및 해제(법 제16조제1항)

○ **(지자체 신청)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계획변경**(중대), **지정해제** 시 법 제5조부터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중기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제5조(지정신청), 제6조(계획제안), 제7조(의견청취), 제8조(특화사업자 지정신청)

※ (지자체) 특구 변경(중대)·해제 신청 시 '특구 변경·해제 신청서(본 매뉴얼 서식4)'를 작성하여 제출(첨부물 포함)

○ **(절차 생략)** 다만, 계획변경 시 **취소·추가**되는 **규제특례**가 ①**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않거나, ②**법 제62~65조**의 **특례**(토지이용 규제특례 등)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8조**(의견청취 및 사업자 지정)의 **절차 생략 가능**(법 제16조제1항 단서)

※ 특구 신규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구계획의 보완 및 추가 시에도 동일(규정 제12조)

<법 제62조~제65조>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한 경우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경우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 경우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나. 중소벤처기업부 직권 변경 및 해제(법 제16조제2항)

○ **개요**

- **(목적)** 운영성과 저조, 법령 위반, 규제특례 미활용 등 **부실 특구**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특구 제도**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 **(권한)** 지자체장 신청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계획 변경** 및 **지정해제** 가능

○ **(판단 체계)** 법령상 **직권해제 사유**(최종 근거), 규정상 **자진신청 요청 사유**(실무 기준)를 상호 연계하여 적용

구 분	법령상 근거(직권조치 사유) * 법 제 16 조제 2 항, 영 제 15 조제 2 항	규정상 기준(자진신청 권고 사유) * 규정 제 6 조제 1 항
① 실익 상실	• **(법 5 호)** 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 년 경과 • **(영 2 호)**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공익상 필요	▸ **(규정 1 호)** 규제특례 활용 완료
② 사업 불능	• **(법 3 호)**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법 2 호) 심각한 부작용 유발**(환경오염, 갈등 등) • **(법 4 호)** 토지이용계획 2 년 내 미제출(≒목적달성 불가)	▸ **(규정 2 호)** 1 년 이상 특례 미활용
③ 운영 부실	• **(법 1 호)** 법령 위반 또는 계획과 다르게 운영 • **(영 1 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 **(영 3 호)** 성과평가 결과 3 회 이상 하위 5%	▸ **(규정 3 호)** 장관의 변경 필요성 인정
④ 기간 만료	• **(법 6 호)** 지정기간 종료 후 1 년 내 조치(연장 등) 없음	-

<특구위원회 의결로 변경·해제하는 경우(중기부 직권)>

① 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운영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②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③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⑥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5조제2항)>

①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② 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③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 상기사항 외에 지자체장에 대한 계획변경·지정해제 신청 조치가 가능한 경우(규정 제6조제1항) >

①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장관이 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권 변경 및 해제 추진 절차도

(1단계 : 탐지) 부실징후 포착(본부, 지방중기청)

1. (트랙 A : 성과평가 기반) 매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진' 등급 특구 최종 확정(본부)
2. **(트랙 B : 상시 모니터링 기반)** 수시 운영상황조사로 특례 미활용 등 부실 징후 탐지(지방중기청)

⇓

(2단계 : 검토) 법적 요건 해석(본부)

1. **(법률 검토)** 탐지된 특구가 법」 제16조제2항(직권 조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2. **(종합 고려)** 직권 해제의 공익적 필요성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종합 분석

⇓

(3단계 : 사전 조치) 자진신청 권고(본부 → 지자체)

1. **(권고 조치)** 직권 해제 전, 지자체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진 계획변경·해제 신청' 권고
2. **(이행 기간)** 지자체에 6개월의 이행 기간 부여(규정 제6조제1항)

※ 지자체가 권고를 수용하여 자진 신청 시 절차 종결

⇓

(4단계 : 청문) 의견 청취 및 방어권 보장(본부→지자체)

1. **(의견 제출)** 해당 지자체장에게 서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2. **(청문 실시)** 행정처분에 앞서 특화사업자 및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대면 청문 실시

※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 이행(법 제141조)

⇓

(5단계 : 처분) 직권 심의·의결(특구위원회)

1. **(안건 상정)** 청문 후에도 해제 사유 미해소 → 장관이 위원회에 직권 조치 안건 상정
2. **(최종 확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해제 또는 계획변경 확정 및 관보 고시

⇓

(6단계 : 후속 제재) 신규 지정 제한

- **(제재 내용)** 직권으로 지정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해제일로부터 일정 기간(2년) 신규 특구 지정 금지(법 제16조제3항, 영 제15조제4항)

다. 졸업 및 구조고도화(성과 중심 관리)

○ **(졸업)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장기·정체 특구***는 **'자진 해제'**를 **권고**하여 **실익 없는 행정력** 소요를 **절감**하도록 유도

* (요건) ①지정 15년 경과, ②최근 5년 우수 이상 등급無, ③지자체 운영의지無

※ (일정) 지자체 대상 권고 및 의견수렴(2~3월) → 위원회 의결 및 졸업 확정(5월)

○ **(구조고도화) 성과**가 **미흡**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특구**는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을 **조치**하고, **지방중기청 중심**의 **컨설팅** 지원

※ (일정) 전년도 부진특구 대상 계획 수립 요청(1~2월) → 지방중기청·전문가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3월) → 정책 부합성 검토(4월) → 위원회 상정 및 후속조치 의결(4~5월)

※ (지자체) '특구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양식(본 매뉴얼 서식10)'을 활용하여 계획서 제출

2 (경우2) 특구계획(경미사항) 변경 신청(법 제16조)

○ **(절차 간소화) 특구 관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영·규정**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중기부 장관 승인**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법 제16조제2항)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15조제1항)>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 변경
②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③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지역특구 운영·관리규정 제6조제2항)

<특화사업 세부계획 변경 내용(규정 제6조제2항)>

① 총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②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외)
③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 제외)
④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⑤ 그밖에 장관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3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에 따른 효과(법 제17조)

○ **특구**의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로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되면,

① **해당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효력을 상실(법 제17조제1항)

② **규제특례**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6개월 내**에 **규제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7조제2항, 영 제16조제1항)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6개월 내**에 **규제특례**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으로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 및 **철거**하여야 함
(법 제17조제3항, 영 제16조제2항)

- 다만, 아래와 같이 **변경** 및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영 제16조제3항)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15조제1항)>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구의 명칭 변경
②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③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세부계획 변경'의 범주는 규정 제6조제2항 참조)

<특화사업 세부계획 변경 내용(규정 제6조제2항)>

① 총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②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외)
③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 제외)
④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⑤ 그밖에 장관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변경·철거 곤란 및 실익이 없는 경우>

①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③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위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 관할 시·군·구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영 제16조제4항)

V 특구 선정·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1 특화사업의 선정 및 기획(민간 주도)

○ **(사전 진단) 특구계획 입안 단계**에서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내 **타 특구**와의 **중복** 여부 및 **지역 기반 산업**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

○ **(2-Track 기획) 2026년 특구육성 방향**에 따라 **지역 산업**의 **성숙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고도화형)** 연고산업 **가치사슬 연결** 및 **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해, **산업 경쟁력**을 **본궤도**에 올리는 **혁신 성장 전략**
- **(도약형) 민간**의 **창의**, **투자**를 마중물로 **로컬 랜드마크** 및 **상권**을 조성하여, **소멸 위기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

○ **(단계적 확대) 초기**에는 실현 가능한 **소규모 선도사업**(앵커사업) 위주로 **구성**하고, 성과 발생 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함

2 규제특례의 선택(실효성 중심)

○ **(필수성 검토)** 단순한 특구 지정용 특례가 아닌, **특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규제**를 **발굴**하여 적용해야 함

- **특례 적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비용·매출 등)과 **잠재적 부작용**(환경·주민갈등 등)을 사전에 **정밀 비교·분석**

○ **(지방중기청 활용)** 특례 발굴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중기청**의 **사전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특례를 설계

3 재원 조달 및 민간 유치(Funding)

○ **(민자 유치) 재정 열악 지자체**는 국·지방비 한계를 보완할 **앵커기업** 등 **민간 자본 유치**가 **특구 성공**의 핵심 관건

※ 수익창출형 특화사업 모델(BM)을 제시하여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

○ **(패키지 연계) 중앙정부**(중기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및 **광역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과 **패키지**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지방비 확보)** 관할 지자체의 **핵심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함으로써 **지방의회 예산 심사**시 **설득력**을 높여야 함

4 사후 관리 및 성과 점검(Feedback)

○ **(자체 평가) 자율평가단**(공무원·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부실 징후 시 **선제적**으로 **대응**

○ **(성과 관리)** 단순 예산 집행률이 아닌, **정책 목표**와 연계된 **고도화**된 **성과지표**(KPI) 중심으로 **관리 체계 전환**

※ 매년 운영성과보고서 제출(~3월 말)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퇴출) 대비

○ **(사업비 관리) 총사업비**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누적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계획**을 **재설정**하고, 필요시 **특구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함

<사업비 관리 원칙 및 계획 변경 가이드>

구분(원칙)	상황(예시)	조치 사항(가이드)
① 기 집행액 감안 (하한선 설정)	• **계획변경 시** '21~'24 년 누적 집행실적(150 억원)이 당초 계획(100 억원)을 이미 초과	• 변경할 총사업비는 **최소 기 집행액(150 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실적 150 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획 축소 불가
② 총사업비 초과 금지 (사전 변경 의무)	• '26 년 **성과보고**('25 년 실적) 시, 금년 실적을 합산하면 전체 총사업비 계획('22~'26 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 전, 반드시 **특구계획 변경(증액)**을 **선행**해야 함 ※ 계획 변경 없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실적은 불인정

5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세(Leadership)

○ **(책임 운영) 지자체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해야만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이 가능함

○ **(사전 협의)** 특구 **지정** 및 **변경** 전, **중기부**(본부, 지방중기청)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컨설팅)를 거쳐 **시행착오,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함

※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규모 용역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 협의 필수

6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시 조례 제정(법 제18조)

○ **특구 관할지자체**는 특구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음

- **해당 조례**는 법령상 **목적**, 승인된 **특구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제·개정**시 **중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7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법 제20조의2, 규칙 제2조의2)

○ **(목적)** 특구 관할 **지자체장** 및 **시·도지사**는 특구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지자체) 지역협의회 운영실적은 '특구 지역협의회 운영현황(본 매뉴얼 서식6)'에 작성하여 중기부(본부)로 제출(반기별)

○ **(구성 및 운영)** 2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26년부터 운영되는 '중앙-지방 특화특구 전략협의체'와 연계하여 규제 애로 해소 창구로 활용 권장

<지역협의회 협의 사항(법 제20조의2제1항)>

①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②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③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④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⑤ 지역특구법 제25조에 따른 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의2)>

① 지역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 위원장은 관할 시·군·구 장이나 시·도지사로 함
② 위원의 구성
- 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 임기 : 2년으로 연임 가능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⑤ 지역협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차지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Ⅵ 특구 운영상황조사

1 목 적

○ 서면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심**의 **'현장 밀착형 상시 점검'**을 통해 **특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

※ **(근거)** 법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 규정 제3조(특구운영 상황 조사)

※ (지방중기청) 현장 점검 수행 시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해 '특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본 매뉴얼 서식7)'를 활용

2 주요 내용 및 절차

○ **(추진체계) 본부**(기획)-**지방중기청**(실행)-**지자체**(조치)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 상시 관리** 및 **특구 운영 내실화**

단계	① 계획 수립	②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③ 결과 통보 및 시정	④ 후속 조치
주체	본 부	지방중기청 (1:1 전담관)	지방중기청 → 지자체	본 부
내용	연간 조사계획 수립	• 상시 모니터링 • 부실 우려 특구 현장 정밀 조사	조사 결과 통보 및 선제적 시정 조치 요구	중대사항 위원회 보고 (직권해제 검토 등)

○ **중점 점검 대상**

① **[필수]**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 **'부진(하위 5%)' 등급**을 받은 특구

※ 부진 특구에 대해서는 단순 서면 점검을 넘어 현장 정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원인 진단 및 개선 가능성 타진

② **[필수]** 특구 지정 후 **장기간(1년 이상) 규제특례 활용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운영 중단(휴면)**이 의심되는 특구

③ **[해당시]** 법 제16조제2항 각 호(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후가 포착된 특구

○ **후속조치**

- **(시정조치)** 경미한 사항은 **지방중기청**이 **지자체**에 **자체 시정**을 **권고**하고, 추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자율적 개선** 유도

※ (지방중기청)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 '시정 및 개선 권고서(본 매뉴얼 서식8)'를 활용하여 지자체에 통보

- **(직권해제) 해제사유**에 해당되어 **회생 불능** 시 **위원회 보고** 후 **직권 해제** 절차에 **착수**하되, **6개월 유예기간 부여**로 연착륙 유도

※ (지방중기청) 부진 특구 운영상황 조사 결과 보고 시 '특구 관리 내역(현장점검 유형 2, 본 매뉴얼 서식5)'을 활용하여 본부에 보고

Ⅶ 특구 운영성과 평가

1 개 요

○ **(목적)**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우수 특구**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진 특구**에는 **구조조정**(퇴출)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근거)** 법 제24조(특구운영의 평가), 영 제17조(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 (지방중기청) 서면 및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특구 운영성과 검증 및 검토의견서(본 매뉴얼 서식9)'를 작성 후 본부(특구운영과)에 송부

○ **(대상)** 운영 중인 **전체 특구**(단, 직전 연도 신규지정 특구는 제외)

2 평가 체계 및 절차(검증 강화)

○ **(평가 지표)** 단순 실적 나열을 지양하고, **핵심성과지표**(KPI) 및 **규제특례 활용**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 지표 고도화

○ **(절차)** **지자체 성과 보고서** 제출 후 **지방중기청**의 철저한 **데이터 교차검증 단계**를 **의무화**하여, **실적 자료**의 **객관성, 신뢰도**를 확보

단계	① 보고서 제출	② 입체적 실적 검증	③ 종합 평가	④ 확정 및 환류
시기	~ 3 월 말	4 월 ~ 5 월	6 월 ~ 10 월	11 월 ~ 12 월
주체	지자체 → 본부	지방중기청(현장)	전문기관 / 평가위	본부 / 특구위
내용	운영성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서면 교차 검증 (증빙 대조) • 현장 실사(필요시) • 검토 의견서 작성	• 정성 평가 • 대국민 평가	• 5 등급 확정 (탁월~부진) •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3 평가 결과 환류(인센티브 & 페널티)

○ **(우수특구 : 인센티브)** **'탁월·우수'** 등급을 받은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특구 전용 메뉴판' 사업**을 **연계 지원**

* 우수특구 내 특화사업 참여 기업·소상공인 대상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등 우대

< 우수특구 전용 지원사업 메뉴판(2026년 기준) >

분 야	프로그램	지원내용	우대사항
판로	판로진출 지원	▪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및 상품 컨설팅	평가 가점
디지털화	스마트 상점	▪ 소상인 대상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도입 지원	우선 선정
	스마트 서비스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지원	평가 가점
	소공인 스마트제조	▪ 수작업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 장비 도입	평가 가점
사업화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 자원 활용 BM 구체화 및 브랜딩 자금	평가 가점

○ **(부진특구 : 구조조정)** 해당 특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차년도 운영상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격한 **구조조정*** 시행

* '부진' 등급이 2회 이상 연속될 경우,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지정해제' 추진

Ⅷ 참 고

1 관련 규정(법령 및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20., 2024. 2. 6.>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의)**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및 제3장제3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규제특례등”이란 규제특례와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5.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6.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	고시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 7. 20.>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의견이 서로 달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7. 20., 2024. 7. 30.>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9. “신기술”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 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11. “규제자유특구계획”이란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등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12.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또는 산업(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지역혁신성장사업: 지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나. 지역전략산업: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는 산업으로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규제자유특구지이용계획”이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지역전략산업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5. “규제자유특구사업자”란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된 자를 말한다.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① 국가와 지방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군·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특화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7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에 20일 이상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반인이 특화특구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특화특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관할 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3. 특화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해야 한다. 1. 최근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 재산 및 손익에 관한 서류 2. 최근 5개 연도의 특화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의 시행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의 내용 2. 신청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관광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 등을 받았는지 여부 3. 신청자의 특화사업 시행능력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능력 ④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그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성명·주소 2. 특화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위치와 면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특화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 6. 재원조달방법 7. 특화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32조제2항, 제44조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특화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3항 단서 및 제3조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의 연기를 요청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3.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화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특화사업의 내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 8. 6.,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를 대표하고 특화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특화특구위원회의 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특화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① 특화특구위원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는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1조(수당)**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9조(같은 조 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우 “특화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특화특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한다.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화특구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에게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취소 또는 추가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 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특화특구의 명칭 변경 2. 특화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특화사업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②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30.>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4.> 1.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화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화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화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화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특구 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1. 민간기업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특화특구를 지정받은 경우 2. 특화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3. 법 제24조 및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특화특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특화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6.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또는 특화특구의 지정기간의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화특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특화특구 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본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특화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화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화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특례 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2.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3.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특화사업자는 미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8조(조례의 제정)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① 정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작성,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의2(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할 시·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및 운영)**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특화사업이나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관계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7.]
제21조(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특화특구의 명칭)특화특구의 명칭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3조(특화특구 운영의 보고)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①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은 날부터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를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 ② 제1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 성과 및 이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평가 내용 2.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 3. 다음 연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
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화특구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① 중소벤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운영의 매년도 성과를 평가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의 활용 효과 3. 지역 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특화특구의 평가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준은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화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특화특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화특구의 유형 전환,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 산·학·연간 협업 등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하고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권고받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에 대하여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포상금의 지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차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최소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포상금이 지급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수는 평가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가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화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8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공립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도 불구하고 그 공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공립학교”로 본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제1항·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특구에서 「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1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되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불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회화지도(E-2): 3년 2. 특정활동(E-7): 5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은 특화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농어촌정비법」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농지법」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축산식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11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휴양시설 또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의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전산지의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스키장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유림 편입 비율은 그 상한의 1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전체 면적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특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그 밖에 산림 시책에 따라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종축업(種畜業)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5.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있을 것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도 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참여한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	
제4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수 있는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4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내용·사유 및 특화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업과의 관계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화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50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화특구의 농업인·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산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2. 2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2. 17.>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2. 17.]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5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① 법 제53조제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라 구분된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묘목포장(苗木圃場) 규모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를 19개 이하의 다른 종자업자와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54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을 위하여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식재산처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56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산업 관련 특화특구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문화·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물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63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47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2. 27., 2023. 10. 31.>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 이후부터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신청 이전까지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 10. 31.> ⑤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개정 2023. 10.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개정 2023. 10. 31.>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체육관련 특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67조(「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에서 닭·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 4.>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여 필요하면「식품위생법」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목개정 2022. 1. 4.]		
제69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자동차관리법」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시·도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개정 2020. 12. 22.>		
제70조(「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		
제3장 규제자유특구(생략)		
제4장 보칙		
제14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1조(의견진술과 청문)①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구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특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화특구위원회·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특화사업자,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실증사업자 및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자 및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화특구계획·규제자유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2. 제1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화특구 및 규제자유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를 지정해제하려는 경우 3. 제89조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 4. 제91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141조의2(적극행정 면책특례)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9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감사원법」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41조의3(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 관리규정 ('25.4.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특구계획"이란 특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특화특구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화특구운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등

제3조(특화특구운영 상황의 조사 등) ① 장관은 특화특구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특화특구운영상황"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특구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특화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하는 사항 등 중요사항은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특화특구운영성과보고서의 평가) ① 장관은 법 제23조와 규칙 제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이하 “특화특구운영의 평가”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할 때 민간기업 및 민간투자의 유치와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평가내용에 대하여도 제2항과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가 종료되면 영 제17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특구 및 법 제2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특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화특구위원회가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평가 전문기관의 기준 및 활용 등)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일 것
2. 전문기관의 사업 내용에 지역발전사업 등에 관한 지원업무 또는 평가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3호의 전담조직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등의 지원·평가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역발전사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등)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상황 조사 결과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결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6개월의 기간을 주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소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구에 적용된 규제특례가 이미 활용·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특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로 지정받은 후 해당 규제특례를 1년 이상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해당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시점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장관이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총 특화사업비 100분의 30미만의 투자재원의 변경
2. 특화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이 되지 아니한 규제특례의 적용 해제(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은 제외한다)
3.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특화특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특화사업비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100분의 50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사항

5. 그밖에 장관이 경미한 세부계획 변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화특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조제1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장관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 조치) ① 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이 중지 또는 특화특구지정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해당 특화특구 지역이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상회복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을 검토한 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이 항에서 “사후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후조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역별 특화특구 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특화특구의 신규지정, 계획변경, 지정해제 등과 관련한 사전컨설팅 및 교육

2. 지역별·기업별 특성에 따른 신규 규제특례 등 정책수요 발굴

3. 특화특구 운영상황 현장점검(반기별 1회 이상) 및 정기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4. 그 외 특화특구의 성과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역협의회 위원에 포함할 것
2.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3장 포상금의 운영 · 관리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과 제외 등)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운영 성과가 우수한 특화특구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이하 “포상금 수령 단체”라 한다)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성과가 전년도보다 하향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국고금관리법」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사용 등) 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화특구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
2. 특화특구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 디자인・포장 개발
3. 특화특구 관련 홍보물 제작, 옥외 광고탑 설치, 홍보관 설치 및 운영, 홍보관련 기자재 구입과 언론기관이나 광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4. 박람회,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특구상품 해외사절단 등 주요행사 참가 또는 특화특구 관련 행사 주관・후원
5. 특화특구 관련 워크숍,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 교육・훈련
6. 특화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7. 특화특구운영 관련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8. 특화특구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특화특구운영 또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이 신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제6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의 용도로 포상금을 사용할 때 포상금 사용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준하여 사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1인당 2백만원 이내
2.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 포상금의 10/100 이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제10조(포상금 사용계획 및 결과 보고 등) ①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사용 용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처, 사용규모 및 사용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장관이 변경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포상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수령 단체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세부내역서를 첨부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용 잔액(포상금으로 발생한 이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금 잔액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포상금 수령 단체에 대하여 최대 4년 이내로 한정하여 새로운 포상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특화특구지정 신청) ① 법 제5조에 따른 특화특구지정 신청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지정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신청 시 규제특례 등 특화특구계획과 관련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미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고「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사본을 특화특구계획에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특화특구계획의 처리 절차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된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관에게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는 특화특구계획에 보완·추가되는 특례 조치 등의 사항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② 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신청된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적용예정 규제특례 소관 규제법령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

제14조(재정지원정책 권고)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에 대하여 해당 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이름
2. 소관 특화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 내용(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규모 또는 재정지원 심사 시 해당 특화특구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말한다.)
3. 소관 특화특구에 지원받고자 하는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과의 연계성 또는 필요성
4. 재정지원정책을 수혜 받을 경우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5. 기타 소관 특구에 재정지원정책이 필요한 보조·설명자료

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재정지원정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의 심의와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 성과 평가에 참여하는 특화특구위원회 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전문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은 특화특구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특화특구 운영·관리 관련 업무 등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한의 변경)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주요현황

(1) 지역특화특구 규제특례 현황(총 129개, 지역특구법 조항順)

□ 일반적 규제특례(총 62개)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교육 특화사업 추진	1	(원법) 초·중등 교육법 §3 (특구법) §28①	지자체 설립 공립학교는 시립(광역)·도립학교로만 가능	교육감 인가를 받아 시립(기초)·군립·구립 학교 설립·운영 가능
	2	(원법) 초·중등 교육법 §4① (특구법) §28②	학교 설립기준은 대통령령(학교설립·운영 규정)을 따름	학교 설립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3	(원법) 초·중등 교육법 §19④ (특구법) §28③	법령에 따른 교원 정원·배치 기준 충족 필수	교원 배치 기준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원의 1/3까지 산학겸임교사 대체 허용
	4	(원법) 초·중등 교육법 §2 (특구법) §28④	공립학교는 시·도가 설립한 시립·도립학교만 인정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시·군·구립학교도 정식 학교로 인정
	5	(원법) 지방 공무원법 등 (특구법) §29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며, 원칙적으로 임용권이 중앙정부(대통령·장관)에 있음	특구 내 공립학교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임용 가능
	6	(원법) 초·중등 교육법 §21 (특구법) §30①	외국인 교원 임용 시 교사자격증 소지 필수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인 교원/강사 임용 가능
	7	(원법) 초·중등 교육법 §61 (특구법) §30②	교육감은 7종의 학교만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	특목고 및 시·군·구립 공립학교도 자율학교 지정 대상에 추가
외국인력 고용	8	(원법) 출입국 관리법 §10 (특구법) §31①	체류자격별 1회 체류기간 상한이 법무부령으로 제한됨	특구 내 외국인의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 적용
	9	(원법) 출입국 관리법 §8 (특구법) §31②	사증 발급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필요	특화사업 종사 외국인에 대해 지자체장이 추천서 발급 가능
특화사업 구역 확보	10	(원법) 군사기지법 §2제6호, §13 (특구법) §32	군사보호구역 내 사업 시 국방부장관 등과 사전 협의 필수	특구계획 승인 시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한 것으로 의제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행사 등 특화사업	11	(원법) 도로교통법 §6 (특구법) §33	경찰청장/서장만이 도로 통행 금지/제한 가능	지자체장이 특화사업(축제 등)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통제 요구 가능
특화사업 홍보 (옥외광고)	12	(원법) 옥외광고물법 §3③ (특구법) §34①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광고물 설치 기준(모양, 크기 등)을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
	13	(원법) 옥외광고물법 §4 (특구법) §34②	시·도지사는 특정 구역의 광고물 설치를 금지/제한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금지구역 내 광고물 설치 허용 가능
문화관광 특화사업 (시설/농지)	14	(원법) 농어촌정비법 §24① (특구법) §35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시 시·도지사 승인 필요	지자체장(관리자)이 시·도지사 승인 없이 시설 폐지 가능
	15	(원법) 농어촌정비법 §61 (특구법) §35②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 변경 시 복잡한 승인 절차 필요	지자체장이 특화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변경 가능
	16	(원법) 농어촌정비법 §81② (특구법) §35③	관광휴양사업의 규모/시설 기준은 부령으로 정함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
	17	(원법) 농어촌정비법 §92 (특구법) §35④	한계농지 정비지구에는 4가지 유형 시설만 설치 가능	기존 4종 외에도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추가 설치 허용
	18	(원법) 농지법 §9 (특구법) §36①	농지 위탁경영은 징집, 질병 등 법정 사유시에만 가능	특화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 위탁경영 허용
	19	(원법) 농지법 §23 (특구법) §36②	농지 임대차는 고령 등 법정 사유 시에만 가능	특화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 임대/사용대 허용
	20	(원법) 농지법 §32 (특구법) §36③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 관련 시설만 설치 가능	특화사업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설치 허용
	21	(원법) 농지법 §36① (특구법) §36④	농지 일시사용 허가는 법령상 4가지 경우만 가능	일시사용 허가 용도를 지자체 조례로 추가하여 허용 가능
	22	(원법) 농지법 §37 (특구법) §36⑤	농지전용 허가 권한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있음	특화사업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임업 특화사업 추진	23	(원법) 산림자원법 §9①·② (특구법) §37	임도 설치는 산림청장 권한이며 타당성 평가 필요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임도 설치 후 산림청 통보
	24	(원법) 산지관리법 §18 (특구법) §38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시행령으로 엄격히 규정	관광휴양시설, 스키장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적용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국유림 활용 (매각/대부)	25	(원법) 국유림법 §20 (특구법) §39①	국유림 매각·교환은 공익사업 등 법정 사유 시만 가능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 매각/교환 허용
	26	(원법) 국유림법 §21① (특구법) §39②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는 법정 사유 시만 가능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허용
	27	(원법) 국유림법 §22 (특구법) §39③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는 원칙적 금지	기부채납 또는 철거 조건으로 국유림 상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유통	28	(원법) 농안법 §17① (특구법) §40	시(市)가 도매시장 개설 시·도지사 허가 필요	특구 관할 시·군은 도지사 허가 없이 지방도매시장 개설 가능
	29	(원법) 약사법 §45⑤ (특구법) §41	한약도매상은 업소마다 1명 이상의 관리약사를 둬야 함	일정 규모 이하 시, 1명의 관리약사가 10개 업소 공동 관리 가능
의료업	30	(원법) 의료법 §49 (특구법) §42	의료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부대사업만 가능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6종의 부대사업을 추가로 영위 가능
특화사업 구역 확보 (묘지/토지수용)	31	(원법) 장사법 §27② (특구법) §43①	분묘 개장(改葬)을 하려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통보해야 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보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단축
	32	(원법) 장사법 §27⑤ (특구법) §43②	개장 공고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개장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토계획 및 건축기준 완화	33	(원법) 국토계획법 §28①·⑤ (특구법) §44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필요	특구계획 수립 시 의견을 들었다면 별도의 청취 절차 생략(의제)
	34	(원법) 국토계획법 §8⑤ (특구법) §44②	토지이용구역 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일정 규모(1㎢) 미만 등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생략 가능
	35	(원법) 국토계획법 §77 (특구법) §44③	용도지역별 건폐율 한도는 법령/조례로 엄격 제한	특화사업 관련 시설에 한해 건폐율을 150% 범위 내에서 완화
	36	(원법) 국토계획법 §78 (특구법) §44④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는 법령/조례로 엄격 제한	특화사업 관련 시설에 한해 용적률을 150% 범위 내에서 완화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도로 및 공원 점용 허가	37	(원법) 도로법 §61① (특구법) §45	도로 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따름	특화사업을 위한 점용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함
	38	(원법) 공원녹지법 §24③ (특구법) §46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은 법령에 규정됨	공익시설에 한해 점용 대상 및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
	39	(원법) 공원녹지법 §27③ (특구법) §46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름	공익시설에 한해 행위 허가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
	40	(원법) 공원녹지법 §38③ (특구법) §46③	녹지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은 법령에 규정됨	공익시설에 한해 녹지 점용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41	(원법) 산업입지법 §8 의 2 (특구법) §47	면적 요건 미달 또는 미분양 비율이 높은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 불가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 제한 요건(면적, 미분양 등) 예외 적용
기업활동 지원	42	(원법) 공정거래법 §40② (특구법) §48	사업자 간 공동행위(담합 등)는 공정위 인가를 받아야 가능	특화사업을 위한 공동연구·기술개발은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국·공유재산 활용 (수의계약)	43 ~ 47	(원법) 국유재산법 등 (특구법) §49②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처분 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특화사업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가능
지역 특산주 제조면허	48	(원법) 주류 면허법 §3 (특구법) §50	주류 제조면허 취득을 위해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함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조례로 완화하여 면허 취득 지원
박물관·미술관	49	(원법) 박물관 미술관법 §16 (특구법) §51	박물관·미술관별로 각각 학예사를 고용해야 함	최대 5 개(본인+4 개) 박물관·미술관이 학예사를 공동으로 고용 가능
지리적 표시	50 ~ 51	(원법) 농수산물품질법 §32 (특구법) §52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시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따름	특화사업 관련 품목은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
종자업 등록	52	(원법) 종자산업법 §37① (특구법) §53①	종자업 등록 시 엄격한 시설기준(묘목포장 규모 등) 충족 필요	특구 내에서는 시설기준(과수 묘목포장 등)을 완화하여 적용(7 천㎡→5 천㎡)
	53	(원법) 종자산업법 §37② (특구법) §53②	종자업자는 반드시 1 명 이상의 종자관리사를 둬야 함	최대 20 개(본인+19 개) 업체가 종자관리사를 공동으로 고용 가능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54	(원법) 산업집적법 §28 의 3② (특구법) §54①	지식산업센터 임대료는 법령상 하한선(시세의 50% 등)이 존재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료 하한 없이 저렴하게 공급 가능
	55	(원법) 산업집적법 §39 의 2① (특구법) §54②	산업용지 분할 면적은 1,650 ㎡ 이상이어야 함	특화사업을 위한 경우 900 ㎡ 이상으로 소규모 분할 허용
기업활동 지원	56	(원법) 특허법 §61 (특구법) §55	특허 출원 시 심사 순서는 접수 순서가 원칙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는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
	57	(원법) 기업규제완화법 §37, §38 (특구법) §56	대기/수질환경기술인은 사업장별 임명이 원칙	같은 산단 내에서는 관리기관장이 통합하여 기술인을 임명 가능
국토계획 및 건축기준 완화	58	(원법) 건축법 §20① (특구법) §57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허가가 필요함	문화·예술 특구 내 야외전시/촬영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59	(원법) 주택법 §54 (특구법) §58	주택 공급(분양) 기준은 국토부령(주택공급규칙)을 엄격히 따름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급기준(순위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함
특화사업 구역 확보 (묘지/토지 수용)	60	(원법) 토지보상법 §3 (특구법) §59①	토지 수용은 별도 법률에 규정된 공익사업만 가능	특화사업(생산, 유통, 관광 등)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 수용권 부여
재정 투자심사	61	(원법) 지방재정법 §37 (특구법) §60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특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유통	62	(원법) 유통산업발전법 §29① (특구법) §6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요건으로 부지면적 3만㎡ 이상 필요	특구 내에서는 2만㎡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토지이용 규제특례(총 54개)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	63 ~ 69	(원법) 국토계획법 §30 (특구법) §64①제 1 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관계기관 협의 등 복잡한 입안·결정 절차가 필요함	특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개별 사업구역 지정 의제	70	(원법) 국토계획법 §40 (특구법) §64①제 2 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은 해수부 장관의 결정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
	71 ~ 72	(원법) 관광진흥법 §52, §54① (특구법) §64①제 3 호	관광지·관광단지 지정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73	(원법) 산업집적법 §23 (특구법) §64①제 4 호	유치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함	특구계획 승인 시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74	(원법) 도시개발법 §3 (특구법) §64①제 5 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등의 지정 결정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75	(원법) 물류시설법 §22 (특구법) §64①제 6 호	물류단지 지정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물류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76	(원법) 산업입지법 §6 등 (특구법) §64①제 7 호	산업단지 지정은 종류별로 지정권자의 지정 승인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특례 적용 산단 한정)
지역개발 사업 연계	79 ~ 80	(원법) 지역개발지원법 §11⑥, §19 (특구법) §64④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후에도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시행자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특구계획을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특화사업자를 시행자로 각각 간주하여 별도 절차 생략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보호구역 해제 의제	77	(원법) 산림보호법 §11①제 1 호 (특구법) §64③제 1 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산림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
	78	(원법) 농지법 §31 (특구법) §64③제 2 호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은 시·도지사 및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농업진흥지역 등이 해제·변경된 것으로 간주
산지·농지 전용 허가	81	(원법) 초지법 §23 (특구법) §65①제 1 호	초지 전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함	특구계획 승인 시 초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82 ~ 84	(원법) 산지관리법 §14 (특구법) §65①제 2 호	산지 전용/일시사용 시 산림청장 등의 허가·신고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산지 전용 허가·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
	85 ~ 88	(원법) 산림자원법 §36 (특구법) §65①제 3 호	입목 벌채 및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시 허가·신고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입목 벌채 등 허가·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
	89	(원법) 농지법 §34 (특구법) §65①제 4 호	농지 전용 시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농지 전용 허가·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
	90 ~ 91	(원법) 농어촌정비법 §23 (특구법) §65①제 5 호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시 관리자(농어촌공사, 지자체장)의 승인의 승인·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기반시설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수자원 활용 점용 허가	92 ~ 93	(원법) 하천법 §30, §33, §50 (특구법) §65①제 6 호	하천 공사 및 점용 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구계획 승인 시 하천 공사/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94 ~ 95	(원법) 공유수면법 §8, §17 (특구법) §65①제 7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관리청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96 ~ 98	(원법) 공유수면법 §28, §35, §36, §49①제 3 호 (특구법) §65①제 7 호	공유수면 매립 시 매립면허 취득 및 협의 절차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개발행위 및 도로 개설	99 ~ 100	(원법) 국토계획법 §56, §86, §88 (특구법) §65①제 8 호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개발행위 허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
	101 ~ 103	(원법) 도로법 §21②, §36, §61 (특구법) §65①제 9 호	도로 공사 시행 및 점용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구계획 승인 시 도로 공사/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104	(원법) 사도법 §4 (특구법) §65①제 10 호	사도(私道) 개설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시설 조성 인·허가	105 ~ 106	(원법) 관광진흥법 §54, §55 (특구법) §65①제 11 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 시·도지사, 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107	(원법) 산업입지법 §19 (특구법) §65①제 12 호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109	(원법) 체육시설법 §12 (특구법) §65①제 14 호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사업계획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구계획 승인 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기타 인·허가	108	(원법) 국유재산법 §30 (특구법) §65①제 13 호	행정재산 사용 시 중앙관서장의 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110 ~ 111	(원법) 수도법 §17, §49. §50 (특구법) §65①제 15 호	수도사업 경영 시 기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인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112	(원법) 하수도법 §16 (특구법) §65①제 16 호	공공하수도 공사 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113 ~ 114	(원법) 사방사업법 §14, §20 (특구법) §65①제 17 호	사방지 내 행위 허가 및 해제 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결정이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사방지 행위 허가 및 지정 해제된 것으로 간주
	115	(원법) 소하천정비법 §14 (특구법) §65①제 18 호	소하천 점용 시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구계획 승인 시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116	(원법) 부동산거래신고법 §11 (특구법) §65①제 19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함	특구계획 승인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권한이양 규제특례(총 13개)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체육 시설업 등록 권한	117 ~ 118	(원법) 체육시설법 §12, §19① (특구법) §66①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등)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	특구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승인 및 등록 처리 가능
축산물 위생 (도축/가공)	119	(원법) 축산물 위생법 §7 (특구법) §67①	가축 도살·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도축장)에서만 해야 함	닭·오리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당에서 직접 도살·처리 허용
	120	(원법) 축산물 위생법 §22 (특구법) §67③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허가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특구 관할 지자체장이 직접 허가 가능(유가공업 한정)
식품·위생 기준 완화	121	(원법) 식품 표시광고법 §4 (특구법) §68①	식품 표시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을 따라야 함	특구 제조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가능
	122	(원법) 식품 위생법 §43 (특구법) §68②	식품접객업 영업시간/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정해야 함	지자체장이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 시 영업시간 및 행위 제한을 달리(완화) 정할 수 있음
교통 통제	123	(원법) 자동차 관리법 §25 (특구법) §69	국토부장관은 비상사태, 극심한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만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음	지자체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가능(축제 등)
노인복지 시설 기준 완화	124	(원법) 노인 복지법 §33 (특구법) §70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은 복지부령을 따라야 함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125	(원법) 노인 복지법 §33 의 2 (특구법) §70②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 세 이상으로 법정 제한을 받아야 함	입소 자격을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가능
기타 규제 적용 배제	126	(원법) 영화 비디오법 §90③제 1 호 (특구법) §71 제 1 호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 시 등록 수수료 납부 규정 적용 배제
	127	(원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78 (특구법) §71 제 2 호	에너지관리자 등 교육 미이수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함	특화사업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 적용 배제

목 적	연번	관련 법령	기존 규제(Before)	적용 특례 (After)
	128	(원법) 소음·진동관리법 §8 (특구법) §71 제 3 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허가를 받아야 함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 시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규정 적용 배제
	129	(원법) 농수산물 품질법 §5②	표준규격품(수산물) 출하 시 포장 겉면에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함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 시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특구법) §71 제 4 호		

(2) 시 · 도별 지역특화특구 지정 현황('26.1월 기준)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노원구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2007년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성동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중랑구	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용산구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2021년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2024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남 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진 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2021년
	서 구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2022년
대구	중 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북 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중구·수성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2021년
인천	서 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중 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남 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동 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대전	서구·유성구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 특구	2024년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중 구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2023년
	울산광역시, 동구, 울주군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2025년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 특구	2024년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2015년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양주시,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2018년
	성남시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2021년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년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2006년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강릉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2014년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군	홍천 청정 산양삼산업특구	2014년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2021년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옥천 옻산업특구	2005년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2005년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5년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음성군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2006년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2011년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2023년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금산·추부 깻잎특구	2015년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홍성군	홍성 저탄소·유기농업특구	2014년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2010년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고창군	고창 복분자·식초 산업특구	2004년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2005년
	부안군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정읍시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전남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2005년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광양시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2017년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2025년
	고흥군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2010년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시·도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년도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강진군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	2023년
	무안군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2023년
경북	영양군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2005년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영천시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2005년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2005년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김천시	김천 포도·자두산업 특구	2006년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포항시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경주시	경주 화랑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경남	창녕군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거창 치유산업특구	2016년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2019년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진주시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2023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

3 유관기관 연락처

□ 제도 운영 총괄 및 지원(중기부 본부·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기부로부터 특구 관련 컨설팅,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기 관 명	구 분	직 위	연 락 처	담 당 분 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제도 총괄	사무관	044-204-7591	• 특화특구 제도 운영·관리 및 법령 총괄 • 특구위원회 운영 총괄 및 대내외 현안 대응
		주무관	044-204-7597	• 특화특구 관련 지원사업(예산) 및 통계 관리, 특구위원회 운영 지원
	권역별 관리(1)	사무관	044-204-7594	• **[수도권 1(경기·인천), 강원, 충청권]** 지정·변경·해제 검토 • 특화특구 운영성과 평가 총괄 및 관련 부대행사
	권역별 관리(2)	사무관	044-204-7593	• **[수도권 2(서울), 경상권]** 지정·변경·해제 검토 • 기존 규제특례 실효성 검증 및 대안 마련
	권역별 관리(3)	사무관	044-204-7595	• **[전라, 제주권]** 지정·변경·해제 검토 •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및 발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사업처)	실 무 지 원	부 장	055-751-9403	• 특화특구 제도 운영 관련 제반 실무사항 지원

□ 지방중소벤처기업청(현장 밀착 지원 및 1:1 전담관 운영)

※ 지방청별 전담관이 기획(사전검토)·운영(상시점검)·평가(실적검증) 등 특구 전주기를 현장 밀착 지원

관할 구역	지방청명(위치)	담당 부서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동)	창업벤처과	02-2110-6357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 로 8)	창업벤처과	051-601-5150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 달서구 성서 4 차첨단로 122-11)	창업벤처과	053-659-2292
광주·전남· 제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391)	창업벤처과	062-360-9131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창업벤처과	031-201-6921
인천광역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지역혁신과	032-450-1152
대전·세종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지역혁신과	042-865-6146
울산광역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지역혁신과	052-210-0050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지역정책과	033-260-1613
충청북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 로 48)	지역혁신과	043-230-5346
충청남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 층)	지역혁신과	041-415-0633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지역혁신과	063-210-6452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 번길 50)	지역혁신과	055-268-2558

4 실무 서식 및 작성 예시(※ 각 서식별 예시 포함)

(1) [지방중기청] 특구계획 사전 검토의견서

1. 개 요

구 분	내 용
진단 대상	(지자체명) / (특구명)
특구 유형	□ 고도화형(가치사슬 연결) □ 도약형(앵커기업·랜드마크)
검토 일자	2026 년 월 일
작 성 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여 전문가	1. 소속/성명 : (분야 :) 2. 소속/성명 : (분야 :)

2. 실현 가능성 중점 점검

① [지역 적합성] 지역 특화자원과의 연계성

※ 사업 추진의 지역적 당위성 및 기존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 여부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1. 지역 연고성 - 지역 내 특화자원(특산물, 자연환경, 전통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가? - 단순 구상 단계가 아닌, 사업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기반 시설 및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② [재원 확보] 투자의 실재성 및 구체성

※ 계획된 예산(특히 민자)의 실질적 조달 가능성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여부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2. 지방비 매칭 여력 –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매칭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 의회 사전 보고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가?	□ 적정 □ 미흡	
3. 민간 투자 확실성 – 민간 사업자(앵커기업 등)의 참여 의향이 확실한가? – 단순 MOU를 넘어, 구체적 투자 시기·금액이 명시된 확약(LOI)이 있는가?	□ 적정 □ 미흡	

③ [추진 체계 및 파급효과]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 전담주체의 명확성, 일자리·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4. 전담 조직 및 운영 주체 – 지자체 내 전담팀 또는 사업을 수행할 민간 위탁기관(공사, 공단 등)이 확정되어 있는가? – 잦은 인사이동에도 사업을 지속할 거버넌스(협의회 등)가 있는가?	□ 적정 □ 미흡	
5. 성과 창출 가능성(지역활력) – 단순 특구 지정을 넘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생활인구(방문객) 유입 확대나 청년 정착 지원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 유인책이 있는가?	□ 적정 □ 미흡	

3. 지방중기청 종합 검토의견

구 분	내 용
종합 판정	□ 적 정(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부 신청 타당) □ 조건부 적정(아래 보완사항 이행을 전제로 신청 가능) □ 재검토(준비 부족으로 사업 실현이 어려워 기획 보완 필요)
보완 필요사항 (컨설팅 의견)	
행정 사항	귀 지자체는 상기 '보완 필요사항'을 특구계획에 반영한 후, '사전 검토결과 반영 내역서(서식 2)'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1. 개 요

구 분	내 용
진단 대상	*(지자체명) 충남 ○○군 /* *(특구명)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안)*
특구 유형	*■고도화형(가치사슬 연결) □도약형(앵커기업·랜드마크)*
검토 일자	*2026 년 0 월 00 일*
작 성 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OOOO 과* *직급 : 주무관 성명 : 이 중 기 (서명 또는 인)*
참여 전문가	*1. 소속/성명 : A 대학 김○○ 교수(분야 : 식품·바이오 산업)* *2. 소속/성명 : B 법무법인 박○○ 변호사(분야 : 규제 법률)*

2. 실현 가능성 중점 점검

① [지역 적합성] 지역 특화자원과의 연계성

※ 사업 추진의 지역적 당위성 및 기존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 여부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1. 지역 연고성 – 지역 내 특화자원(특산물, 자연환경, 전통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가? – 단순 구상 단계가 아닌, 사업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기반 시설 및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는가?	*■ 적정* *□ 미흡*	*[확인 완료]* *• 관내 약초 재배 농가 500 호 및 1 차 가공 기업 20 개사 소재* *• 기존 농공단지 내 유휴 부지를 특화 사업 부지로 활용 예정*

② [재원 확보] 투자의 실재성 및 구체성

※ 계획된 예산(특히 민자)의 실질적 조달 가능성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여부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2. 지방비 매칭 여력 –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매칭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 의회 사전 보고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가?	■ 적정 □ 미흡	*[확인 완료]* *• 군의회 사전 보고('26.2.) 완료 및 '27년도 본예산 편성 확약 공문 확인함*
3. 민간 투자 확실성 – 민간 사업자(앵커기업 등)의 참여 의향이 확실한가? – 단순 MOU를 넘어, 구체적 투자 시기·금액이 명시된 확약(LOI)이 있는가?	□ 적정 ■ 미흡	*[보완 필요]* *• 참여 기업(C사)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구체적 투자 시기 및 금액이 명시되지 않음*

③ [추진 체계 및 파급효과]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 전담주체의 명확성, 일자리·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

점검 항목 (Check Point)	판 정	비고 (확인사항)
4. 전담 조직 및 운영 주체 – 지자체 내 전담팀 또는 사업을 수행할 민간 위탁기관(공사, 공단 등)이 확정되어 있는가? – 잦은 인사이동에도 사업을 지속할 거버넌스(협의회 등)가 있는가?	■ 적정 □ 미흡	*[확인 완료]* *• '미래전략과' 내 특구전담팀 신설 예정* *• (재)○○공단과 위탁운영 협의 완료*
5. 성과 창출 가능성(지역활력) – 단순 특구 지정을 넘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생활인구(방문객) 유입 확대나 청년 정착 지원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구체적 유인책이 있는가?	□ 적정 ■ 미흡	*[보완 필요]* *• 하드웨어(가공센터) 건립 계획 위주이며, 청년 창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부족함*

3. 지방중기청 종합 검토의견

구 분	내 용
종합 판정	*□ 적 정(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부 신청 타당)* *■ 조건부 적정(아래 보완사항 이행을 전제로 신청 가능)* *□ 재검토(준비 부족으로 사업 실현이 어려워 기획 보완 필요)*
보완 필요사항 (컨설팅 의견)	*1. (민자 확실성 보완) 앵커기업 C사와 재협의하여, '2027년까지 20억 원 투자'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공증된 투자확약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것* *2. (운영 프로그램 보강) 단순 가공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이오 창업 보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특화사업 내용에 추가할 것* *3. (갈등 관리) 가공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인근 마을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실적(동의서)을 보완할 것*
행정 사항	귀 지자체는 상기 '보완 필요사항'을 특구계획에 반영한 후, '사전 검토결과 반영 내역서(서식 2)'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 지방중기청 사전 검토결과 반영 내역서

1. 개 요

구 분	내 용
특 구 명	(지자체명) / (특구명)
진단 결과	□ 적 정 □ 조건부 적정 □ 재검토
진단 통보일	2026 년 월 일 (문서번호 :)

2. 진단 결과 반영 내역

※ 지방중기청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서 수정내역 기재

연번	보완 요구사항 (지방중기청 검토 의견)	조치 결과 및 반영 내용(지자체)	확인 (계획서 쪽수)
1		•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사유 별첨) • (조치 내용)	p.
2		•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사유 별첨) • (조치 내용)	p.

연번	보완 요구사항 (지방중기청 검토 의견)	조치 결과 및 반영 내용(지자체)	확인 (계획서 쪽수)
3		•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사유 별첨) • (조치 내용)	p.
4		•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 (사유 별첨) • (조치 내용)	p.

3. 미반영 및 이견 사항(해당 시)

※ 지방중기청(전문가) 의견 중 현실적 제약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소명

연번	미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대안 (구체적 소명)
–		

위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전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출하며, 해당 내용이 특구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작성 예시

1. 개 요

구 분	내 용
특 구 명	*(지자체명) **충남 ○○군*** *(특구명)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안)***
진단 결과	*□ 적 정 ■ **조건부 적정** □ 재검토*
진단 통보일	*2026 년 3 월 00 일(문서번호 : 충남지방중기청-1234)*

2. 진단 결과 반영 내역

※ 지방중기청(전문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서 수정내역 기재

연번	보완 요구사항 (지방중기청 진단 의견)	조치 결과 및 반영 내용(지자체)	확인 (계획서 쪽수)
1	*(민자 확실성 보완) 앵커기업 C 사와 재협의하여, '2027 년까지 20 억 원 투자'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공증된 투자 확약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것*	• ***반영 여부*** *■ 반 영 □ 미반영* • ***(조치 내용)** 앵커기업 C 사와 투자 협약 갱신 완료. '2027 년까지 공장 증설에 20 억 원 투자' 및 위약 시 페널티 조항이 명시된 공증 확약서를 첨부하였음*	*p. 112 (별첨 3)*
2	*(운영 프로그램 보강) 단순 가공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이오 창업 보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특화 사업 내용에 추가할 것*	• ***반영 여부*** *■ 반 영 □ 미반영* • *(조치 내용) 세부 특화 사업으로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예산 2 억원)' 및 '라이브커머스 판로 지원(예산 1 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p. 45 ~ p. 48*

연번	보완 요구사항 (지방중기청 진단 의견)	조치 결과 및 반영 내용(지자체)	확인 (계획서 쪽수)
3	*(갈등 관리) 가공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인근 마을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실적(동의서)을 보완할 것*	• *반영 여부* ■ 반 영 □ 미반영 • *(조치 내용) 사업비 내 폐수정화조 설치비(1.5 억) 반영 및 설계도면 첨부. 인근 △△마을 주민 설명회(3.25.) 개최 결과 찬성 동의서(동의율 90%) 확보 및 제출*	*p. 135* *(별첨 5)*

3. 미반영 및 이견 사항(해당 시)

※ 지방중기청(전문가) 의견 중 현실적 제약 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소명

연번	미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대안 (구체적 소명)
–	*해당 없음*	*모든 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

위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전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출하며, 해당 내용이 특구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3 월 00 일

신청인 : 충남 ○○군수 (인)

(3) (지자체) 특구 지정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자가진단용)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특 구 명	(지자체명) / (특구명)
점검 일자	2026 년 월 일
점 검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2. 정책 부합성 및 전략방향 점검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사전 진단	1. **지방중기청 사전 진단 결과 반영 여부** • 지방중기청의 사전 검토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반영 내역서**를 작성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민간 주도	2. **민간기업 투자 확약(LOI) 확보 여부** • 지자체 재정 외에 앵커기업 등의 **구체적 투자 금액·시기**가 명시된 확약서가 첨부되었는가? ※ 단순 참여의향서 불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권장	□ 예 / □ 아니오

3. 법적 필수 기재사항 점검

※「지역특구법」제9조 및「시행령」제6조에 따른 필수 포함 사항 누락 여부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근거
기본 현황	3. **명칭·위치·면적 및 기간 설정** • 특구 명칭에 "특구"가 포함되고 타 특구(관광, 연구개발)와 구분되는가? • **특구 지정기간**과 **특화사업 시행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 조① 영 6 조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근거
사업 내용	**4.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 특화사업의 내용과 이를 수행할 사업자(지자체, 민간 등)가 특정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재원 조달	**5.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규제 특례	**6. 규제특례 세부 자료** • 적용하려는 특례(제2장제2절)의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자료**가 포함되었는가? •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영 제6조제6호)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영 6조
부동산 대책	**7.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토지 이용	**8. 특화특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 **(선택 A)**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 **(선택 B)** 현 시점 제출이 어려워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하겠다고 명시함	□ A / □ B	법 9조 ①,②
	9. (선택 A 해당시)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심의 결과 첨부) • 특구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가 첨부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영 6조
기타	**10. 회원 모집 계획 (해당 시)** • 시설(골프장 등)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그 모집 계획이 포함되었는가?	□ 해당 / □ 미해당	법 9조①

4. 절차적 정당성 및 증빙 점검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근거
공고 열람	**11. 주민 공고 및 열람 기간 준수** • 관보/공보 게재일로부터 **20 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 일반인이 **14 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법 7 조
의견 청취	**12. 공청회 및 지방의회 절차** •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 일 전**까지 공고하였는가? (결과 반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찬성 등)가 반영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7 조 영 6 조

위 점검항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필수 요건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 반려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확인자(담당 과장) : (서명)

※ 작성 예시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특 구 명	*(지자체명) 충북 ○○군* *(특구명)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
점검 일자	*2026 년 4 월 10 일*
점 검 자	*소속 : ○○군 경제과 직위 : 지역경제팀장* *성명 : 김○○ (인)*

2. 정책 부합성 및 전략방향 점검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사전 진단	1. **지방중기청 사전 검토 결과 반영 여부** • 지방중기청의 사전 검토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반영 내역서**를 작성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민간 주도	2. **민간기업 투자 확약(LOI) 확보 여부** • 지자체 재정 외에 앵커기업 등의 **구체적 투자 금액·시기**가 명시된 확약서가 첨부되었는가? ※ 단순 참여의향서 불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권장	■ *예* / □ *아니오*

3. 법적 필수 기재사항 점검

※「지역특구법」제9조 및「시행령」제6조에 따른 필수 포함 사항 누락 여부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근거
기본 현황	3. **명칭·위치·면적 및 기간 설정** • 특구 명칭에 "특구"가 포함되고 타 특구(관광, 연구개발)와 구분되는가? • **특구 지정기간**과 **특화사업 시행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 조① 영 6 조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근거
사업 내용	**4.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 특화사업의 내용과 이를 수행할 사업자(지자체, 민간 등)가 특정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재원 조달	**5.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인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규제 특례	**6. 규제특례 세부 자료** • 적용하려는 특례(제2장제2절)의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자료**가 포함되었는가? •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영 제6조제6호)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영 6조
부동산 대책	**7.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9조①
토지 이용	**8. 특화특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 **(선택 A)**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 **(선택 B)** 현 시점 제출이 어려워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하겠다고 명시함	■ A / □ B	법 9조 ①,②
	9. (선택 A 해당시) 관련 절차 이행 여부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심의 결과 첨부) • 특구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가 첨부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영 6조
기타	**10. 회원 모집 계획 (해당 시)** • 시설(골프장 등)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그 모집 계획이 포함되었는가?	□ 해당 / ■ 미해당	법 9조①

4. 절차적 정당성 및 증빙 점검

구 분	점검 항목 (Check Point)	확인	근거
공고 열람	**11. 주민 공고 및 열람 기간 준수** • 관보/공보 게재일로부터 **20 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 일반인이 **14 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예 / □ 아니오	법 7 조
의견 청취	**12. 공청회 및 지방의회 절차** •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 일 전**까지 공고하였는가? (결과 반영) •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찬성 등)가 반영되었는가?	■ 예 / □ 아니오	법 7 조 영 6 조

위 점검항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필수 요건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 반려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4 월 00 일

확인자(담당 과장) : ○○군 경제과장 박 OO (서명)

(4) (지자체) 특구 지정(변경 · 해제) 신청서(※지형도면 기준 포함)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정 □ 변경 □ 해제] 신청서</td></tr>
<tr><td rowspan="4">신청자</td><td colspan="2">①지방자치단체명</td><td></td><td>②공동신청여부</td><td>[ ] 단독 [ ] 공동</td></tr>
<tr><td colspan="2">③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td><td></td><td>④특화특구계획안 열람 기간</td><td></td></tr>
<tr><td colspan="2">⑤공청회 개최일</td><td></td><td>⑥특화사업자 지정일</td><td></td></tr>
<tr><td colspan="2">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td><td></td><td>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td><td></td></tr>
<tr><td rowspan="9">특화특구계획</td><td colspan="2">⑨특화특구 명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⑩특화특구 위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⑪특화특구 면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⑫대외적 표시방법</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⑬특화 사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⑮특화사업자</td><td colspan="3">성명 :
주소 :</td></tr>
<tr><td rowspan="3">⑯규제특례를 적용·해제 받고자 하는 조문</td><td>일반적인 규제특례</td><td colspan="3"></td></tr>
<tr><td>토지이용 규제특례</td><td colspan="3"></td></tr>
<tr><td>권한이양 특 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⑰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td><td colspan="3">[ ] 대 상(OOO 협의 완료) [ ] 비대상</td></tr>
</table>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자료

1. 특화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64조제1항 · 제3항, 제65조제3항 및 영 제37조 · 제38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작성 요령 >

① 지방자치단체명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시 · 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명만 기재

② 공동신청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

③ 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④ 특화특구계획안 열람기간 (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날 기재

⑤ 공청회 개최일 (예시 : 년 월 일)
특화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

⑥ 특화사업자 지정일
신청자 자신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복수의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일자 기재

⑦ 지방의회 의견청취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일을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공문 발송일을 기재

⑧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⑨ 특화특구 명칭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구' 라는 명칭만 사용하면 되지 '지역특구' 라는 명칭까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 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⑩ 특화특구 위치
특화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 · ○○리 · ○○리 일원
- ○○○도 ○○군 ○○면 ○○리 · ○○리 ○○번지 외 필지

⑪ 특화특구 면적
특화특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특화특구의 총 면적을 ㎡ 단위로 기재

⑫ 대외적 표시방법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좋은 명칭을 선택하여 기재하되 명칭사용 기준은 ⑨ 특화특구의 명칭 사용 기준과 동일하며 ⑨의 명칭과 동일하여도 됨

⑬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을 기재하되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만 3개 이내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것은 특화특구계획에 기재. 다만, 특화사업은 불법이거나 위법이어서는 아니됨

⑭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되 사업의 종료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세부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별도로 기재

⑮ 특화사업자 (예시 : ○○군 외 3개 사업자)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개 사업자"로 기재. 주소는 대표사업자의 주소만 기재

⑯ 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장제2절(제28조부터 제71조까지)에 규정된 규제특례는 적용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문(조문의 일부항만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항까지 기재)을 모두 기재

⑰ 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특화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지정해제 신청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

⑱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특화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 추진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기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 제출 부수 >

1. 특화특구지정신청서 앞장, 특화특구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은 20부를 제출
2. 규제특례 적용에 필요한 각각의 첨부서류는 총 3부 제출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특화특구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CD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

※ 작성 예시

<table>
<tr><th colspan="6">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정 □ 변경 □ 해제] 신청서</th></tr>
<tr><td rowspan="4">신청자</td><td colspan="2">①지방자치단체명</td><td>광주광역시 ○○구(기초)</td><td>②공동신청여부</td><td>[○] 단독 [ ] 공동</td></tr>
<tr><td colspan="2">③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td><td>2026 년 1 월 5 일 ~ 2026 년 1 월 26 일 (22 일간)</td><td>④특화특구계획안 열람 기간</td><td>2026 년 1 월 5 일 ~ 2026 년 1 월 26 일 (22 일간)</td></tr>
<tr><td colspan="2">⑤공청회 개최일</td><td>2026 년 1 월 20 일</td><td>⑥특화사업자 지정일</td><td>2026 년 2 월 10 일</td></tr>
<tr><td colspan="2">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td><td>2026 년 2 월 25 일</td><td>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td><td>2026 년 2 월 15 일</td></tr>
<tr><td rowspan="9">특화특구계획</td><td colspan="2">⑨특화특구 명칭</td><td colspan="3">○○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td></tr>
<tr><td colspan="2">⑩특화특구 위치</td><td colspan="3">광주광역시 ○○구 △△동 123-4 번지 외 50 필지</td></tr>
<tr><td colspan="2">⑪특화특구 면적</td><td colspan="3">500,000 ㎡</td></tr>
<tr><td colspan="2">⑫대외적 표시방법</td><td colspan="3">○○ 퓨처 바이오 특구</td></tr>
<tr><td colspan="2">⑬특화 사업</td><td colspan="3">1. 지역 약초 고부가가치 가공 및 R&D 센터 조성
2. 스마트 바이오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3.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브랜드 마케팅</td></tr>
<tr><td colspan="2">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td><td colspan="3">2026 년 ~ 2030 년 (5 년간)</td></tr>
<tr><td colspan="2">⑮특화사업자</td><td colspan="3">성명(대표자) : ①광주광역시 ○○구청장(공공)
②(주)바이오○○ 대표이사 김○○(민간) 외 2 인
주소(주된사무소) : 광주광역시 ○○구 구청로 1</td></tr>
<tr><td rowspan="3">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td><td>일반적인 규제특례</td><td colspan="3">법 제 55 조(특허법), 법 제 48 조(독점규제법)</td></tr>
<tr><td>토지이용 규제특례</td><td colspan="3">법 제 36 조(농지법), 법 제 38 조(산지관리법)</td></tr>
<tr><td>권한이양 특 례</td><td colspan="3">법 제 34 조(옥외광고물법), 법 제 68 조(식품위생법)</td></tr>
<tr><td colspan="3">⑰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td><td colspan="3">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3">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td><td colspan="3">[■] 대 상(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완료) [ ] 비대상</td></tr>
</table>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2026년 3월 00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광주광역시 ○○구청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자료

1. 특화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38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정 ■ 변경 □ 해제] 신청서

신청자	①지방자치단체명	*강원특별자치도 △△군 (기초)*	②공동신청여부	*[○] 단독 [ ] 공동*
	③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2026 년 4 월 1 일 ~ 2026 년 4 월 22 일 (22 일간)*	④특화특구계획안 열람 기간	*2026 년 4 월 1 일 ~ 2026 년 4 월 22 일 (22 일간)*
	⑤공청회 개최일	*2026 년 4 월 15 일*	⑥특화사업자 지정일	*2026 년 5 월 10 일 (변경지정일)*
	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	*2026 년 4 월 25 일*	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	*해당 없음*

특화특구계획	⑨특화특구 명칭		*(당초) △△ 산림 레포츠 특구 → (변경) △△ 포레스트 어드벤처 특구*
	⑩특화특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군 □□면 산림로 일원*
	⑪특화특구 면적		*(당초) 1,200,000 ㎡ → (변경) 1,350,000 ㎡ (150,000 ㎡ 증가)*
	⑫대외적 표시방법		*△△ 익스트림 산림레포츠 특구*
	⑬특화 사업		*[기존] 1.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 (완료)* *[기존] 2.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개최 (계속)* *[신규] 3. 패밀리 어드벤처 존 및 숲속 캠핑장 확장*
	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당초: 2022 년 ~ 2026 년 → 변경: 2022 년 ~ 2028 년 (2 년 연장)*
	⑮특화사업자		*성명: ①△△군수, ②(신규)(주)포레스트△△ 대표 박○○*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군 군청길 10 외 1 개소*
	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유지] 법 제 33 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유지] 법 제 34 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유지] 법 제 49 조(「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추가] 법 제 36 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추가] 법 제 45 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토지이용 규제특례	*[삭제] 법 제 64 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권한이양 특 례	*해당 없음*

⑰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1. 규제특례 정비* *- 기 완료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 의제 조항(법 제 64 조)은 목적 달성에 따라 삭제하고, 진입도로 확장(도로법) 및 추가 체험장 부지 확보(농지법)를 위한 특례를 신설* *2. 사업 규모 확대* *-가족 단위 체험객 유치를 위한 어드벤처 존 신설 및 사업 기간 2 년 연장*
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 대 상(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완료) [ ] 비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2026년 7월 00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강원특별자치도 △ △ 군 수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자료

1. 특화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64조제1항 · 제3항, 제65조제3항 및 영 제37조 · 제38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정 □ 변경 ■ 해제] 신청서

신청자	①지방자치단체명	경상북도 XX군 (기초)	②공동신청여부	[○] 단독 [ ] 공동
	③특화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기간	2026년 2월 1일 ~ 2026년 2월 21일 (20일간)	④특화특구계획안 열람 기간	2026년 2월 1일 ~ 2026년 2월 21일 (20일간)
	⑤공청회 개최일	해당 없음 (사유: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취소되는 규제특례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제7조에 따른 절차 생략)	⑥특화사업자 지정일	해당 없음
	⑦지방의회 의견청취일	2026년 3월 5일(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생략 가능하나, 알림 차원에서 보고)	⑧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일	해당 없음
특화특구계획	⑨특화특구 명칭	XX 명품 곶감 산업 특구		
	⑩특화특구 위치	경상북도 XX군 OO면 감나무길 일원		
	⑪특화특구 면적	850,000 ㎡		
	⑫대외적 표시방법	XX 황금곶감 명품화 특구		
	⑬특화 사업	1. 곶감 가공시설 현대화 및 저장고 건립(완료) 2. XX 곶감 브랜드 명품화 및 지리적 표시 등록(중단) 3. 곶감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립화)		
	⑭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종료) 2014년 ~ 2025년 (12년간, 사업기간 만료)		
	⑮특화사업자	성명: XX군수 주소: 경상북도 XX군 군청대로 1		
	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일반적인 규제특례)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토지이용 규제특례)	해당 없음		
	⑯규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조문 (권한이양 특례)	• 법 제68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⑰특화특구지정 해제 및 승인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사항		해당 없음		
⑱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 ] 대 상 [■] 비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및 같은 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특구계획 변경·특구지정 해제를 신청 합니다.

2026년 3월 00일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경상북도 ○○군수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첨부자료

1. 특화특구계획(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64조제1항·제3항, 제65조제3항 및 영 제37조·제38조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첨부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서 양식(표준 목차)

※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1. 문서 편집 표준

- o **작성 S/W :** 한글 워드프로세서 표준문서(HWPX)
- o **용지 규격 :** A4(국배판), 세로 작성 원칙
- o **글자 모양 :** 본문 14포인트, 휴먼명조, 줄 간격 160%
- o **분량 제한(별첨 자료 포함)**
  - 신규 지정 : 총 200페이지 이내
  - 계획 변경 : 총 100페이지 이내
  - 지정 해제 : 총 50페이지 이내

2. 군더더기 빼기

- o **(일반현황 삭제)** 특구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시·군 전체의 연혁, 유래, 행정구역, 기상/기후, 단순 인구 추이** 등은 작성 금지
  (필요 시 1페이지 요약표로 갈음)
- o **(상위계획 복사 금지)** 중앙부처의 연두 업무보고, 지자체의 민선 0기 시정 운영 방향(복지, 안전 등 전 분야) 등 **백화점식 정책 나열 금지**

※ **(작성 불가 예시)** "OO부 2030 비전(6대 전략, 18대 정책목표 전체 나열)", "00시 10대 핵심 공약(노인복지, 교통혁신 등 무관한 내용 포함)"

① [유형 1] 특구 신규지정

1. 특구의 개요

가. 특구 명칭 : 00특구

나. 특구 위치 : 00시·도 00군 00리 일원

※ (작성법) 리·동 단위까지 기재하고, 특구 위치 및 특화사업 분포도(지형도 포함)를 반드시 그림으로 삽입

다. 특구 면적 : 0000㎡

※ (작성법) 특화사업별(생산기반, 처리가공, 관광시설 등)로 구분하여 아래 표를 작성

특화사업	위치	필지수	면적(㎡)

라.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00특구

※(작성법) 특구 명칭과 동일하여도 무방하며, 별도 브랜드 로고가 있는 경우 삽입

마. 특구 지정기간 : 0000년~0000년

바. 비전 및 추진전략(체계도)

※(작성법) 사업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줄글 나열 대신 도표로 작성

2. 특구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작성법) 지역의 현안 문제와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기술

나. 특구지역 여건 분석

(1) 지리적 여건 :

(2) 산업 여건 :

(3) 교육 또는 의료·복지 여건(※ 해당 특구인 경우에만 작성) :

※(작성법) 일반적인 시군 현황은 배제하고,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아래 내용만 분석

- 지리적 여건 : 특화사업 적합성(기후, 토양 등), 교통 접근성 등
- 산업 여건 : 해당 특화산업의 인프라, 관광자원 현황 등
- 교육 또는 의료·복지 여건 : 교육기관, 의료시설, 복지 인프라 현황 등

다. 특구(해당 업종 또는 품목) 특성 및 생산기반 현황

※(작성법)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황(업체수, 매출),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

라. 특구지정의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

(2) 경제적 필요성 :

※작성법

- 정책적 필요성 : 정부 국정과제, 시·도 종합계획과의 부합성 등 기술
- 경제적 필요성 :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발 및 비용 절감 효과 등 기술

마.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1) 정책적 효과 :

(2) 경제적 효과 :

※작성법

- 정책적 필요성 : 균형발전 기여도,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정성적 기대 효과
- 정책적 필요성 : 생산유발효과 00억원, 고용창출 00명, 기업유치 00개 등을 반드시 정량적 수치로 제시

바.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1) 국내 수요 예측 : (객관적 시장 조사 데이터 제시)

(2) 국외(수출) 수요 예측 :

※ 작성법 : 막연한 기대가 아닌, 객관적인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기술

사.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 작성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기본계획'과 특구 계획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

아. 다른 법률에 의한 특구·지구·구역 등 설정 여부

구 분	명 칭	지정 면적	근거 법령	비 고 (특화사업과의 관계)
기존	*○○ 경제자유구역*	*000㎡*	*경제자유구역법*	*특화사업 부지와 일부 중복 (연계 개발 예정)*
예정	*○○ 도시재생사업*	*000㎡*	*도시재생법*	*2027년 지정 신청 예정*

※ 작성법

- 신청하려는 특구 구역 내에 이미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예정인 타 법령상 용도지구·특구 현황을 기재
- 기재 예시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광특구(「관광진흥법」)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가. 특화사업

(1) 특화사업 개요

※ (작성법) 총괄표 및 로드맵 제시

(2) 특화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세부사업, 사업기간, 규모 등)

※ (작성법) 각 세부 사업별 사업기간, 규모, 주요 내용, 소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특화사업자(지자체/공공/민간 구분)

구 분	사업자명(대표자)	소재지(주소)	주요 역할(참여 사업명)
총 괄 *(지자체)*	*○○군* *(군수 ○○○)*	*전북특별자치도 ○○군* *○○로 123*	• *특구 운영 총괄 관리 및 행정지원* • *○○센터 건립(재정사업) 수행*
민 간 *(앵커)*	*(주)○○바이오* *(대표 ○○○)*	*충청남도 ○○시* *○○길 45*	•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운영* • *가공식품 R&D 및 유통망 구축*
공 공	*(재)○○테크노파크* *(원장 ○○○)*	*○○광역시 ○○구* *○○대로 1*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술 이전 및 창업 보육*

※(작성법) 특화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신청인), 민간, 공공으로 구분하여 기재

4. 특구 토지이용계획(※ 해당 시 작성)

※(작성법) 「지역특구법」 제62조~65조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특례(용도지역·지구 변경, 농지전용 등)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작성

- (사전절차)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포함
- (작성규격) 토지이용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계획설명서를 수록하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작성 기준에 준하여 작성
- (첨부서류) 「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제65조(인허가 의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구비 서류를 함께 첨부

5. 규제특례사항

가. 특구계획의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범위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사업명
일반 규제 특례				
토지 이용 특례				
권한 이양 특례				

※ 작성법

- 규제특례사항 : 관례 법령 및 해당 조항을 정확히 기재(예 :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24조])
- 필요성 : 특화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특례 적용이 왜 필수적인지 그 당위성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적용범위: 특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위치(지번), 시설, 대상자 등을 특정
- 세부사업명 : 해당 특례를 활용하여 추진할 구체적인 단위 사업명

6. 연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가. 연도별 집행계획

연도별 / 사업별		사업기간	재원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26	'27	'28	'29	'30
총 계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지역특화사업(1)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지역특화사업(2)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세부사업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나. 재원조달방법

(1) 국비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소관부처	회계명	사업명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26	'27	'28	'29	'30
총 계			계									
특화사업	소계		소계									
	세부사업		소계									

(2) 지방비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지자체	회계명	사업명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26	'27	'28	'29	'30
총계			계									
			도비									
			군비									
특화사업	소계		소계									
			도비									
			군비									
	세부사업		소계									
			도비									
			군비									

(3) 민자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	특화사업자	사업명	연도별 투자예산(백만원)					
						계	'26	'27	'28	'29	'30
총계			계								
특화사업	소계		소계								
	세부사업		소계								

※ 작성법

- 합리적 추계 : 5개년 계획 특성상 확정액 기재가 어려우므로, 객관적 산출 기초(단가×물량, 표준품셈, 조달청 단가 등)에 근거한 합리적 추정액을 기재
- 재원 확보 계획 : 시기별로 구체화 정도를 달리하여 기술
  - (단기 : 1~2년차) 예산 편성 완료, 실시 설계비 확보 등 확실성 위주
  - (중장기 : 3~5년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모사업 신청 등 방향성 위주
- 민간 투자 : 경기 변동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 (초기) 부지 매입, 시설 건립 등 확약(LOI)이 가능한 필수 자금
  - (후기) 시설 운영 수익을 마케팅이나 유지보수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 제시
- 수치 정합성 : 세부 내역은 추계치라 하더라도 [총사업비 = 세부사업비 합계 = 재원별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계산 오류 주의)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 작성법 : 특구 지정에 따른 지가 상승 우려 지역 모니터링, 투기 억제 대책 등 기술

8. 「지역특구법」 제32조제2항, 제44조제5항, 제4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시 작성)

※ 작성법

- 제32조제2항(군사기지법 특례) :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경계 및 해당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등을 기재
- 제44조제5항(국토계획법 특례)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드시 포함
- 제48조제2항(공정거래법 특례) :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공동행위 인가 의제를 받기 위한 특례 적용의 필요성 및 공동행위의 세부 내용 기재
- 제68조제1항·제2항(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특례) :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식품 표시기준 내용, 완화하려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의 세부 사항 기재
- 제69조제1항(자동차관리법 특례) : 자동차 운행 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70조제1항(노인복지법 특례) : 조례로 달리 정하려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운영 기준 및 설치신고 사항 등 조례의 주요 내용 기재
- 제71조(개별법 적용배제 특례) : 영화비디오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음진동관리법, 농수산물품질법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9. 「지역특구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해당 시 작성)

※ 작성법 : 위 특례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작성

- 제28조제2항(초·중등교육법 특례) : 특화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학교의 설립기준
- 제34조제1항·제2항(옥외광고물법 특례) :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표시방법 등 허가·신고의 기준 및 금지·제한
- 제35조제3항(농어촌정비법 특례)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제36조제4항(농지법 특례) :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
- 제43조제2항(장사법 특례) : 분묘 개장(改葬) 공고에 필요한 사항
- 제44조제3항·제4항(국토계획법 특례) : 특화사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공원녹지법 특례) :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대상 및 기준
- 제58조(주택법 특례) : 주택의 공급 기준
- 제70조제1항(노인복지법 특례)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운영 기준 및 설치신고 사항
- 영 제32조제3항(주류면허법 특례) :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 기준

10.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해당 시 작성)

※ 작성법 : 시설명, 모집 시기, 모집 규모, 회원 권익 보호 방안 등 기술

11.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작성법

- 공고 및 열람 : 법정 기간(20일 이상) 준수 여부가 드러나도록 공고일, 열람 기간, 공고 매체(도보, 군보, 홈페이지, 신문 등)를 명시
- 공청회 개최 :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현장 사진을 반드시 첨부
- 의견 반영 여부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수용/부분수용/불수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조치 계획을 표로 정리

  * (예시) "00마을 소음 우려" 의견 → (조치) "방음벽 설치 예산 0억 원 반영(수용)"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 작성법

- 상정 및 의결 : 의회 상정 일자, 안건 번호, 의결 결과(원안 가결, 수정 가결 등)를 기재

- 주요 의견 :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및 향후 이행 계획 기술
- 증빙 자료 : 의회 회의록 발췌본 또는 의결서 사본을 첨부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시 작성)

※작성법

- 대상 여부 :「지역특구법」제62조에 따라 특화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용도지역 변경 등)하는 경우에만 작성
- 심의 내용 : 심의 일자, 심의 기구(00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명 기재
- 심의 결과 :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등의 결과를 명시하고, 조건부 의결 시 해당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반드시 포함

12. 특화사업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방안

가. 품질 관리 체계 : (품질인증 획득 계획, 자체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등)

나. 사후 관리(AS) 및 소비자 보호 방안 :

※ 작성법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특산물)이나 서비스(관광 등)의 품질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제시

13. 기타 필요 첨부서류

가.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작성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특구 구역계를 정확히 표시하여 작성
- (주의) 단순 약도나 그림지도가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도면을 첨부해야 함

나. 법 제13조, 영 제14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작성법 : ①사업의 적합성, ②규제특례와 사업의 연관성, ③재원확보 및 투자유치 가능성, ④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⑤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기술

다. 법 제10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본안) 요약본 첨부
-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 제외 사유(면적 산출 근거, 개발행위 미수반 사유 등)가 명시된 '자체 검토보고서(내부결재 등)'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질의 회신 공문(사본) 첨부

② [유형 2]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개요

가. 특구 명칭 :

※작성법 : 기존 명칭을 기재하되, 명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당초) OOO → (변경) OOO' 형식으로 병기

나. 변경 사유 :

※작성법 : 단순 기간 연장이나 예산 증액 사유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나 앵커 기업 유치 등 계획 변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을 기술

다. 신·구 내역 대비표(총괄)

※작성법 : 특구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표로 작성하며, 변동이 없는 항목도 '변동 없음'으로 기재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당초(변경 전)	변경(변경 후)	비 고 (증감)
명칭			
위치			
면적(m2)			
기간			
사업비(백만원)			

라. 변경 후 비전 및 추진전략(체계도)

※작성법 : 신규 사업 추가 등으로 추진전략, 비전, 단계별 목표가 수정된 경우, 변경된 전략 체계도를 도표(인포그래픽)로 작성하여 시각적으로 제시

2. 특구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 변경 신청 시점 기준)

가. 추진 경과

※작성법 : 최초 지정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행정 절차(지정, 착공, 준공 등) 및 앵커기업 유치 등 시계열순으로 요약 기술

나. 주요 추진 성과(누적)

※작성법 : 현재까지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있으며 계획 변경(확장/연장)을 통해 성과 확산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함

(1) 정량적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작성법 : 투자유치액, 고용인원, 매출액 등 핵심지표(KPI)에 대한 당초 목표와 현재 실적, 달성률을 수치로 명시

(2) 정성적 성과

※작성법 :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브랜드 가치 상승, 주민 인식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 질적 변화 기술

3. 특구 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계획변경의 필요성

※작성법 :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왜 지금 시점에 변화(기간 연장, 사업 추가 등)가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기술

(1) 정책적 필요성

※작성법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상위 계획, 특구 제도 개편방안(고도화/도약형) 등 정책 기조와의 부합성 기술

(2) 경제적·산업적 필요성

※작성법 : 시장 트렌드 변화, 전후방 연관 산업 파급 효과, 기업의 투자 수요 등을 근거로 기술

(3) 지역적 필요성

※작성법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주민 소득 증대, 지역 내 미해결 과제 해소 측면에서 기술

나. 계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법 : 계획 변경이 승인될 경우 예상되는 미래 성과를 예측하여 기술

(1) 정량적 효과 (변경 기간 내 추가 창출 효과)

※작성법 : 계획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 매출,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산출 근거와 함께 제시

(2) 정성적 효과

※작성법 : 지역 이미지 개선, 정주 여건 향상, 규제 혁신 사례 창출 등 파급 효과 기술

다. 변경된 특화사업에 대한 수요 전망

※ 작성법 : 사업 기간 연장이나 신규 사업 추가시, 이에 대한 국내외 수요 예측 자료(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

4. 세부 변경 내역

가. 특구 면적 및 위치 변경(※ 해당 시 작성)

(1) 변경 사유 :

※작성법 :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체적인 이유(신규 시설 부지 확보, 사업 취소 등)를 명시

(2) 변경 내역 :

※작성법 :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의 지번, 면적, 현재 용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지형도면을 별첨

나. 특화사업 계획 변경

(1) 변경 총괄(사업 추가/삭제/내용변경 등)

※작성법 : 기존 사업의 유지/변경/종료 여부와 신규 사업 추가 내역을 표로 정리

구분	특화사업명	변경 여부	주요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및 계획
1				
2				
3				

(2) 세부사업별 변경 내역

※작성법 : 각 단위 사업별로 변경 전후의 사업 내용(위치, 규모, 예산, 기간, 운영 방식)을 상세 비교하고,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을 기술

다. 생산물 품질관리 방안

※ 작성법 : 신규로 추가되는 특화사업(제품, 서비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품질 인증 획득 계획, 사후 관리 방안 등을 기술

5.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총괄 변경 내역

※작성법 : 전체 사업비의 증감 내역을 재원별(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증감의 주된 원인(물가 상승, 사업 확대, 기업 투자 등)을 비고란에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액	변경 사유
총계				
국비				
지방비				

나. 연도별 집행계획(변경분)

※작성법 : '기 집행액(변경 신청 전년도까지)'과 향후 '계획 변경으로 집행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도별로 배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기투자)	'00년	'00년	'00년	비고
변경 예산						
증감액						

다. 세부 재원조달방안

※작성법 : 단순히 '확보 예정'이 아닌 구체적인 조달 근거를 제시해야 함

(1) 국비·지방비 :

※(작성법) 예산 편성 내역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확인서, 공모사업 선정 공문 등 증빙 내용 기술

(2) 민자 :

※ (작성법) 앵커기업 투자확약서(LOI), 이사회 의결서, 자금 보유 증명(통장 사본 등) 등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내용 기술

6. 규제특례 변경 (※ 특례 추가/삭제 시 작성)

가. 규제특례 변경 총괄표

※ 작성법 : 전체 특례 목록을 나열하고 변경 상태(유지, 삭제, 추가, 내용변경)를 표시

번호	구분	규제특례사항(법 조항)	변경사항	비고
1				
2				
3				

나. 세부 변경 사유 및 내용

※ 작성법 : 변경되는 특례에 한하여 '왜 필요한지(Why)', '어디에 적용하는지(Where)', '무엇을 할 것인지(What)'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특례 적용을 위한 사전 심의 결과(※ 해당 시)

※ 작성법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관련 특례 변경 시,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재

7. 특구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또는 토지이용규제 특례 변경 시 작성)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총괄

※ 작성법 : 변경 전후의 용도지역·지구 변화를 표로 정리하고, 증가/감소 내역을 명시

(단위 : m^2)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감 (B-A)	비 고
면 적				
용도지역				
지 구				

나. 세부 토지이용계획(신규 편입지 중심)

※ 작성법 :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현재 현황(지목, 소유자)과 향후 개발 계획(시설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8.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면적 확대 시 작성)

※ 작성법 : 특구 면적 확대로 인한 투기 우려 지역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계획 기술

9.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정 필수사항)

※ 작성법 : 「지역특구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 외에, 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포함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

10.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해당 시)

※작성법 : 계획 변경에 따라 지자체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현황 기술

11. 특화사업 시설의 회원 모집 계획 (※ 해당 시)

※작성법 : 골프장, 리조트 등 회원 모집이 필요한 시설이 추가된 경우, 모집 시기/규모/보호대책 기술

12. 특구 계획변경에 필요한 사항(행정절차 이행 실적)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법 제5조)

※작성법 : 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정 공고 기간(20일 이상) 및 열람 기간(14일 이상) 준수 여부, 공청회 개최 실적 및 주민 의견 반영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증빙(공고문, 회의록, 사진) 첨부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법 제6조)

※작성법 : 지방의회 상정 안건명, 의결 일자, 의결 결과(원안 채택, 수정 채택 등), 의회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 기술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작성법 :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일자 및 심의 결과(조건부 가결 등)와 조치 계획 기술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결과(법 제10조)

(1) 대상 여부 자가진단(법적 기준 검토)

※ 작성법 : 아래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기재

구 분	해당 여부	검 토 사 유 (면적 산출 근거 등)
재협의 대상 (시행령 제28조)	( )	· 기존 협의 면적 대비 증가율 : _____ % (30% 이상) 또는 · 원형보전지 개발 면적 : _____ ㎡ (10% 이상 & 1만㎡ 이상)
변경협의 대상 (시행령 제29조제1항)	( )	· 기존 협의 면적 대비 증가율 : _____ % (5% 이상 ~ 30% 미만) 또는 · 최소 평가대상 규모(도시 6만, 비도시 1만㎡) 이상 증가 여부 : (O, X)
협의 제외 (시행령 제29조제2항 등)	( )	· 증가율 5% 미만 경미한 변경 · 보안·안전관리·완충공간 확보 사유로 개발행위 없는 단순 편입 · 단순 사업기간 연장 등

(2) 결과 증빙서류(위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서류 첨부)

※ 작성법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대상인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또는 본안) 요약본 첨부
- (대상이 아닌 경우) : 대상 제외 사유(면적 산출 근거, 개발행위 미수반 사유 등)가 명시된 '자체 검토보고서(내부결재 등)'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질의 회신 공문(사본)' 첨부

13. 기타 필요 첨부서류

※ 작성법 : 본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필수 서류 목록 체크

- 변경된 특구 지형도면 : 당초 구역과 변경(확대 혹은 축소) 구역을 구분 표시
- 사업비 증액 및 민자 유치 관련 증빙 : 투자확약서, 예산서, 잔고증명 등
- 신·구 내용 대비표(상세) : 특구계획서 본문 중 변경된 텍스트 발췌본

③ [유형 3] 특구 지정해제

1. 특구 해제 개요

가. 특구 명칭 :

※작성법 : 당초 지정 고시된 특구의 정확한 명칭 기재

나. 지정 기간 :

※작성법 : '최초 지정일 ~ 해제 예정일(또는 기간 만료일)' 기재

다. 해제 사유

(1) 유형 선택

□ 지정기간 만료 □ 특화사업 목적 달성

□ 실현 불가능(중도 포기)

(2) 구체적 사유 기술

※작성법 : 위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를 5줄 이내로 요약 기술. 특히 '실현 불가능(중도 포기)'의 경우 재원 미확보, 주민 반대 등 구체적인 장애 요인과 귀책 사유를 명확히 기술할 것

라. 법적 해제 요건 검토

※작성법 : 본 해제 신청이 「지역특구법」 제16조 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

2. 특구 운영 성과

가. 재원 투입 실적(누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B/A)	비 고
총 계			%	
국 비			%	
지방비			%	
민 자			%	

※작성법 : 특구 지정일로부터 해제 시점까지 투입된 총 누적 예산을 기재하고, 특히 '민자' 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비고란에 구체적인 미달성 사유(투자자 철회, 경기 침체 등)를 반드시 기재

나. 사업 추진 성과 (종합)

(1) 정량적 성과 (누적)

- (투자유치)
- (일자리)

- (매출액)
- (방문객)

※ 작성법 : 당초 특구 계획상의 목표 대비 달성 실적을 수치로 명시하고, 단순 수치 나열보다는 지정 전후의 증가율(%) 등을 통해 성과를 부각

(2) 정성적 성과

※ 작성법 : 지역 브랜드 인지도 상승,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주민 소득 증대 기여 등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적 변화를 기술

다. 규제특례 활용 실적

- (활용 현황) 총 OO건의 특례 중 OO건 실제 활용 (활용률 OO%)
- (주요 활용 사례)

※ 작성법 : 승인받은 규제특례 조항별로 실제 적용 건수를 파악하여 기재하고, 특례 적용이 실제 사업 성과(공기 단축, 비용 절감 등)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해제 후 사후관리 계획(※ 핵심 중요 항목)

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

- (대상 시설)
- (소유권 및 운영주체)
- (운영 재원 조달)

※ 작성법 : 국·시비가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물(건축물, 공원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제 후 소유권 귀속 주체와 실제 운영 주체(직영, 위탁 등)를 명시함. 향후 운영비 충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방치 우려를 해소할 것

나. 미완료 사업 처리 방안(※ 사업 미완료 상태에서 해제 시 작성)

※ 작성법 : 진행 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지 또는 사업을 취소(매몰)할지 결정하여 기술하고, 기 교부된 국비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 및 정산 계획 포함

다. 규제특례 효력 상실에 따른 조치(경과조치)

(1) 규제특례 효력 상실에 따른 처리 방침

※ 작성법 : 해제 시점부터 기존에 적용받던 특례법이 아닌 일반 개별법(농지법, 도로법 등)이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과 이에 따른 행정 처리 기준(신규 인허가 중단 등)을 기술

(2) 시설물 처리 계획

※ 작성법 : 특례로 설치된 시설물(건축물, 광고물 등)에 대해 ① 철거 또는 원상복구 계획, ② 존치 필요 시, 영 제16조 제3항 각 호(철거 곤란, 실익 없음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사유 기술

4. 특구 해제에 필요한 사항(행정절차 이행 실적)

가.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 (공고 및 열람)
- (의견 접수 결과)
- (조치 계획)

※ 작성법 :「지역특구법」 제7조 준용에 따른 공고(20일 이상) 및 열람(14일 이상) 실시 내역을 기재하고, 접수된 주민 의견(지가 하락 우려 등)과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및 해소 방안 기술

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 (일시 및 회기)
- (의견 요지)

※ 작성법 : 지방의회 보고 또는 의결 일자, 의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부대의견) 및 반영 결과를 기술

다. 지형도면 고시 계획(※ 용도지역 환원 시)

※ 작성법 : 특구 지정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던 토지를 해제 후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할지 여부를 기술하고, 환원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계획 포함

5. 기타 첨부 서류

- 특구 운영 성과보고서 (최종분)
- 시설물 인계인수서 (해당 시)

참 고 지형도면 작성 기준

□ **(개요)** '지역특구법'에 따른 **지역특화특구 신규지정·계획변경**시 제출토록 규정된 **지형도면·지적도** 관련 세부사항 안내

< 관련 근거(지역특구법) >

지역특구법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법적 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화특구 계획서 내 **지형도면**은 ①**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형도**를 활용, ②**축적 1:500~1,500*****으로 **작성** 필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지역·지구등 데이터베이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음,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 단,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6,000 가능

○ **신규지정·계획변경**(중대, 경미)*시 **제출 중**인 **지형도면**이 **규정상 규격**과 **다를 경우, 특구 지정**에 **문제 제기** 가능**

* 지정해제는 지형도면 고시대상에 미해당(지역특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제출 불필요
** 지적이 배제된 지형도나, 대축척으로 작성한 도면은 토지 이용규제 투명화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적 효력발생의 하자요인이 될 수 있음(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잘못된 예시 >

<table>
<tr><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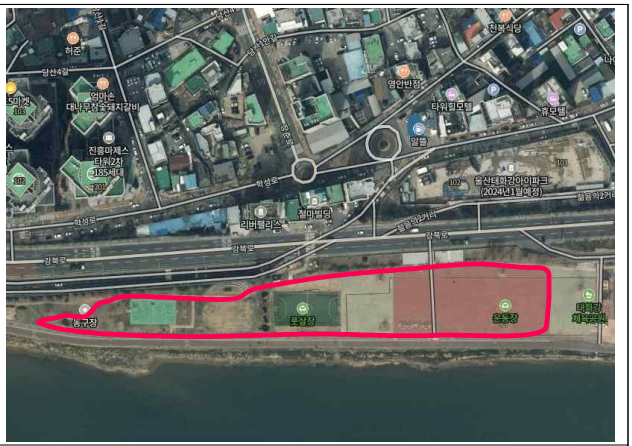 </td></tr>
<tr><td>▲규정 지형도 사용X, ▲규정보다 큰 축적</td><td>단순 위치도</td></tr>
</table>

□ 안내사항(준수 필요)

① 특구 **신규지정, 계획변경**(중대, 경미)시 **규격 지형도면 제출 필수**
→**미제출**시 **위원회 상정**(신규지정, 중대변경), **중기부 승인**(경미변경) **불가**

- 특히, ①기존 신규지정·계획변경시 **규격 지형도면**이 **없었으나** ②**면적 변경**이 없는 **경미변경***시에도 **규격 지형도면 제출 필요**(행정행위 하자의 사후치유)

* ▲특화특구 명칭 변경, ▲특화사업 세부계획 변경, ▲특화사업자 성명·주소의 변경

② **특구 지정면적**이 넓어 1:1,500 축적*으로도 **1장**에 **모든 구역**을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 → **여러 장**의 **도면** 첨부 필요

*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000

- 아울러, **2장 이상**의 **도면**인 경우, **열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별도 총괄도**(축적 1:5,000~50,000) **첨부 가능**(필수는 아니며 선택사항)

< 올바른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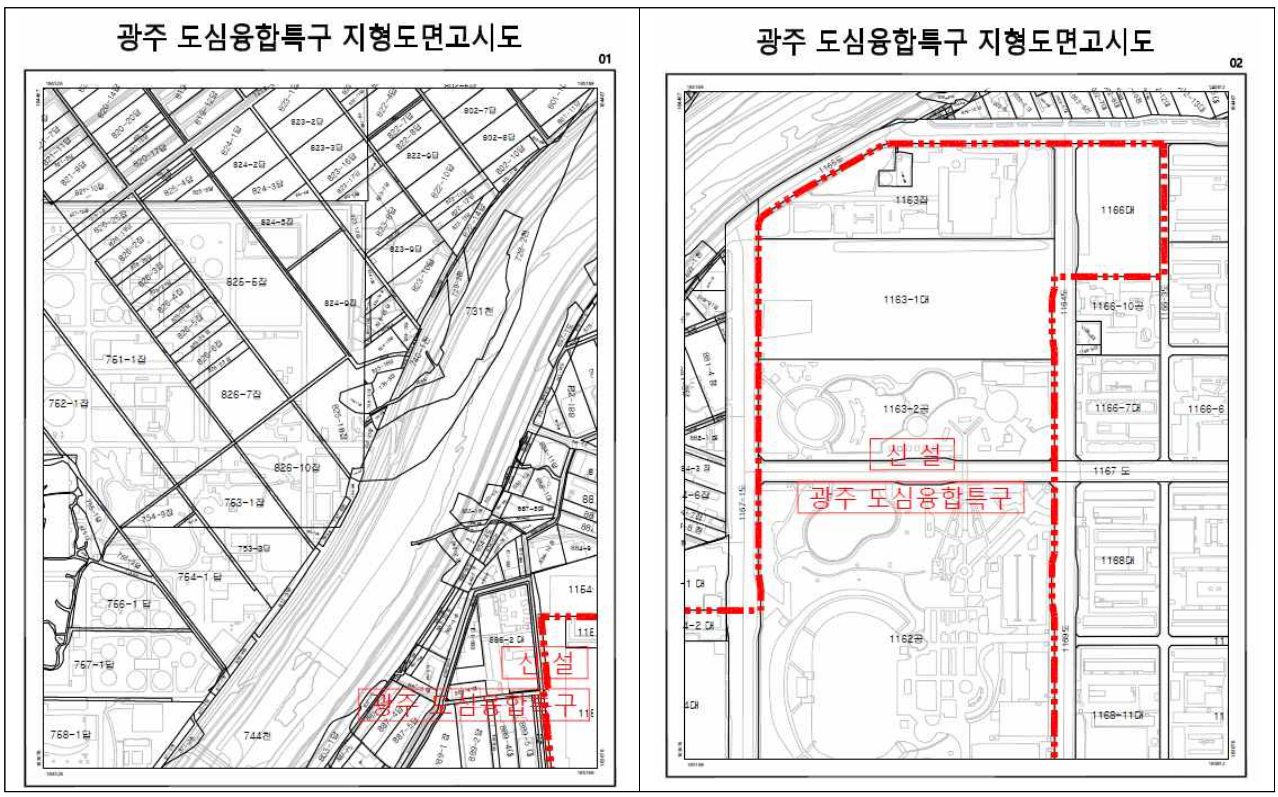

(5) [지방중기청] 특구 관리 내역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현장점검)

<table>
<tr><td colspan="3">지방청명</td><td>00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관할 지역</td><td>00시 · 도</td></tr>
<tr><td colspan="3">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3">00특구(00시) / 00특구(00군)</td></tr>
<tr><td rowspan="6">현
장
점
검</td><td colspan="2">참석자</td><td>(중기부)
(지자체)
(그 외)</td><td>대상 특구</td><td>00특구(00시)</td></tr>
<tr><td colspan="2">일 시</td><td>00월 00일</td><td>장 소</td><td>00시 · 군 · 구청</td></tr>
<tr><td rowspan="4">점
검
결
과</td><td>취지 및 계획</td><td colspan="3"></td></tr>
<tr><td>운영의
적절성 · 효과성</td><td colspan="3"></td></tr>
<tr><td>법령 위반 및
부작용</td><td colspan="3"></td></tr>
<tr><td>지자체 운영
의지 · 노력</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td></tr>
</table>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간담회)

<table>
<tr><td colspan="2">지방청명</td><td>00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관할 지역</td><td>00시 · 도</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3">00특구(00시) / 00특구(00군)</td></tr>
<tr><td rowspan="10">간
담
회</td><td rowspan="8">참석자</td><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특구 명칭</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일 시</td><td>0월 0일</td><td>장 소</td><td>00청 회의실</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수
렴
의
견</td><td>신규 규제특례</td><td colspan="3"></td></tr>
<tr><td>그 외 정책수요</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성명) (서명)</td></tr>
</table>

※ 작성 예시

① [현장점검 유형 1] 기획 지원 및 사전 진단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현장점검)

<table>
<tr><td colspan="2">지방청명</td><td colspan="2">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관할 지역</td><td>대구광역시, 경상북도</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4">○○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군) 외 2개소</td></tr>
<tr><td rowspan="5">현장점검</td><td>참석자</td><td colspan="2">(중기부) 00과장 이○○, 주무관 박○○
(지자체) ○○군 미래전략과장, 00팀장
(그 외) 전문가 자문단(A교수, B변호사), 앵커기업 대표</td><td>대상 특구</td><td>(가칭)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
(신규 기획 중)</td></tr>
<tr><td>일 시</td><td colspan="2">2026년 3월 00일
(14:00~16:00)</td><td>장 소</td><td>특화사업 예정 부지
(○○면 일원)</td></tr>
<tr><td rowspan="4">점검결과</td><td>취지 및 계획</td><td colspan="4">• [기획 지원] 신규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진단’ 현장 확인
• 가치사슬(생산-가공-유통) 연결 가능성 및 규제특례 적용 타당성 검토</td></tr>
<tr><td>운영의 적절성·효과성</td><td colspan="4">• (BM 진단) 약초 생산 단지는 우수하나, 가공 시설 예정지가 협소하여 확장성이 부족함
• (특례) 신청 예정인 ‘농지법’ 특례 구역이 농업진흥구역과 겹쳐 부처 협의 난항 예상</td></tr>
<tr><td>법령 위반 및 부작용</td><td colspan="4">• 해당 없음 (아직 지정 전 단계임)
• 단, 가공 공장 설립 시 폐수 발생에 따른 주민 반대 민원 소지가 있어 사전 갈등 관리 방안 수립 권고</td></tr>
<tr><td>지자체 운영 의지 · 노력</td><td colspan="4">• 군수가 직접 민간 앵커기업((주)바이오)을 유치하고 투자확약서(MOU)를 체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력함</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6">제출일 : 2026 년 4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사무관 (성명) 이00 (서명)</td></tr>
</table>

② [현장점검 유형 2] 부진 특구 운영상황 조사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현장점검)

<table>
<tr><td colspan="2">지방청명</td><td colspan="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관할 지역</td><td>강원도</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4">△△ 인삼 헬스케어 특구(△△군), ○○ 스마트 바이오 특구(○○군) 등 3개소</td></tr>
<tr><td rowspan="5">현장점검</td><td>참석자</td><td colspan="2">(중기부) 00과장 이○○, 주무관 박○○
(지자체) ○○군 부군수, 경제과장
(그 외) -</td><td>대상 특구</td><td>(경고) △△ 인삼 헬스케어 특구(00년도 성과평가 '부진' 등급)</td></tr>
<tr><td>일 시</td><td colspan="2">2026년 5월 12일 (14:00~16:00)</td><td>장 소</td><td>특화사업 현장 (인삼 유통센터)</td></tr>
<tr><td rowspan="3">점검결과</td><td>취지 및 계획</td><td colspan="3">• [운영상황 조사] 과년도 성과평가 결과 '부진(하위 5%)' 등급에 따른 원인 규명
• 특구 지정 해제(직권 해제) 요건 해당 여부 정밀 조사</td></tr>
<tr><td>운영의 적절성·효과성</td><td colspan="3">• (운영 중단) 핵심 시설인 '유통센터'가 운영비 부족으로 6개월째 휴관 상태임
• (특례 미활용) 지정 후 3년간 '농지법' 등 4개 특례의 활용 실적이 전무(0건)함</td></tr>
<tr><td>법령 위반 및 부작용</td><td colspan="3">• (위반) 당초 계획된 재원(군비 20억원)을 미확보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
• (조치) 「지역특구법」 제16조에 의거,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공식 통보하고 3개월 내 구조고도화 계획 미제출 시 직권 해제 상정 예고</td></tr>
<tr><td></td><td>지자체 운영 의지·노력</td><td colspan="3">•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회생 의지가 낮음</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6">제출일 : 2026 년 5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사무관 (성명) 박00 (서명)</td></tr>
</table>

③ [간담회] 현장 소통 및 정책 수요 발굴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 내역(간담회)

<table>
<tr><td colspan="2">지방청명</td><td colspan="2">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d>관할 지역</td><td colspan="2">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 내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5">△△ 인삼 헬스케어 특구(△△군), ○○ 스마트 바이오 특구(○○군) 등 3개소</td></tr>
<tr><td rowspan="10">간
담
회</td><td rowspan="8">참석자</td><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 colspan="2">특구 명칭</td></tr>
<tr><td>지방중기청</td><td>과 장</td><td>이 ○ ○</td><td colspan="2">-</td></tr>
<tr><td>지방중기청</td><td>주무관</td><td>최 ○ ○</td><td colspan="2">-</td></tr>
<tr><td>○○군청</td><td>과 장</td><td>김 ○ ○</td><td colspan="2">스마트 바이오</td></tr>
<tr><td>(주)바이오○○</td><td>대 표</td><td>정 ○ ○</td><td colspan="2">스마트 바이오</td></tr>
<tr><td>△△유통</td><td>이 사</td><td>강 ○ ○</td><td colspan="2">스마트 바이오</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일 시</td><td>2026년 5월 12일
(16:00~17:30)</td><td>장 소</td><td colspan="2">○○군청 2층
소회의실</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5">[현장 소통] 특구 기업 규제 애로 청취 및 신규 특례 발굴
• 바이오 R&D 제품의 특허 등록 지연에 따른 사업화 애로 호소
• 특구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요청</td></tr>
<tr><td rowspan="2">수
렴
의
견</td><td>신규 규제특례</td><td colspan="5">•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려 하나, 「화장품법」상 시설 기준이 과도하여 소규모 공방 운영이 불가함
⇒ (검토) 현재 규제특례 메뉴판(129개)에 없는 사항이므로, 본부에 보고하여 [신규 특례 입법] 가능성 타진 예정</td></tr>
<tr><td>그 외 정책수요</td><td colspan="5">• 특구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부 '동행축제' 참여 기회 확대 및 수출 바우처 가점 부여 요청</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5">• 인근 주민들의 가공공장 소음 우려에 대해,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 방음벽 설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함</td></tr>
<tr><td colspan="7">제출일 : 2026 년 5 월 00 일
(직위 및 직급) 주무관 (성명) 최00 (서명)</td></tr>
</table>

(6) (지자체) 특구 지역협의회 운영현황

■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지역협의회 운영 내역

<table>
<tr><td colspan="2">지자체명</td><td>00시청 · 도청
00시 · 군 · 구청</td><td>관할 지역</td><td>00시 · 도
00시 · 군 · 구</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3">00특구(00시), 00특구(00군)</td></tr>
<tr><td colspan="2">협의회 명칭</td><td colspan="3">00위원회 혹은 00협의회
※지역협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이 설치된 경우에만 기재
(규칙 제2조의2제8항)</td></tr>
<tr><td colspan="2" rowspan="10">지역협의회 구성원</td><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비 고</td></tr>
<tr><td>00</td><td>00</td><td>00</td><td>위원장</td></tr>
<tr><td></td><td></td><td></td><td>위 원</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회의 개최</td><td>참석자</td><td colspan="3">000 등 총 00인</td></tr>
<tr><td>일 시</td><td>0월 0일</td><td>장 소</td><td>00 회의실</td></tr>
<tr><td>논의 의제</td><td colspan="3">※ 법령상 지역협의회 협의사항(법 제20조의2)
1. 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 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 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협업 및 발전 방안
4.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부서) (직위) (성명)</td></tr>
</table>

※ 작성 예시

지역협의회 운영 내역

<table>
<tr><td colspan="2">지자체명</td><td colspan="2">충청남도 ○○군청</td><td>관할 지역</td><td>충청남도 ○○군</td></tr>
<tr><td colspan="2">관할 지역특화발전특구</td><td colspan="4">○○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td></tr>
<tr><td colspan="2">협의회 명칭</td><td colspan="4">○○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협의회</td></tr>
<tr><td colspan="2" rowspan="10">지역협의회 구성원</td><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비 고</td></tr>
<tr><td>충남 ○○군</td><td>군 수</td><td>박 군 수</td><td>위원장</td></tr>
<tr><td>○○군청</td><td>경제과장</td><td>김 과 장</td><td>당연직 위원</td></tr>
<tr><td>(주)바이오○○</td><td>대표이사</td><td>정 기 업</td><td>특화사업자</td></tr>
<tr><td>A 대학교</td><td>교 수</td><td>이 학계</td><td>전문가(바이오)</td></tr>
<tr><td>B 법무법인</td><td>변호사</td><td>최 법 률</td><td>전문가(법률)</td></tr>
<tr><td>○○군의회</td><td>의 원</td><td>조 의 원</td><td>지방행정
경험자</td></tr>
<tr><td>지역주민대표</td><td>이 장</td><td>강 주 민</td><td>주민 대표</td></tr>
<tr><td>충남연구원</td><td>연구위원</td><td>한 연 구</td><td>유관기관</td></tr>
<tr><td rowspan="3">회의 개최</td><td>참석자</td><td colspan="4">위원장 박군수 등 총 7인 (재적위원 8명 중 7명 참석)</td></tr>
<tr><td>일 시</td><td>2026년 4월 5일
(14:00 ~ 16:00)</td><td>장 소</td><td colspan="2">○○군청 2층 상황실</td></tr>
<tr><td>논의 의제</td><td colspan="4">1. [법 제4호] 2025년도 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안) 검토
• (내용) 전년도 성과지표(매출 100억, 고용 50명) 달성 여부 확인 및 보고서 적정성 심의
• (결과) 일부 데이터 오류(고용인원 산정) 수정 후 원안 가결

2. [법 제1호]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 (내용) 앵커기업 투자 이행 현황 및 '농지법' 특례 적용 필지 적정성 점검
• (결과)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조성비 납부 확인 완료

3. [법 제3호] 특구 발전 방안 및 신규 특례 발굴
• (건의) 바이오 제품 신속 사업화를 위한 '특허 우선심사 특례' 도입 필요성 제기
• (결과) 차기 특구계획 변경 시 해당 특례를 추가하기로 협의함</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4">• 위원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보고서를 최종 보완하고, 군수 결재 후 중기부 제출 확정</td></tr>
<tr><td colspan="6">제출일 : 0000 년 00 월 00 일
(부서) 경제과 (직위) 지역경제팀장 (성명) 김00</td></tr>
</table>

(7) [지방중기청] 특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현장 점검용)

※ 작성 및 활용 유의사항

1. 증빙 자료의 확보

- 체크리스트 작성 시 '**예(미활용)', '위반', '미이행', '중단'** 등에 체크한 경우, 단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입증 자료**를 반드시 **본 서식 뒷면**에 **첨부**하여야 함

  * (필수 증빙 예시) 현장 사진(일자 포함), 관계자 확인서(문답서), 미집행 내역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2. 단계별 판정 및 조치 기준

- **[주의] 단계** : **지자체**의 **추진 의지**는 있으나 예산 확보 지연, 행정 절차 미숙 등으로 **일시적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조치) 지방중기청장 명의**의 **'시정 및 개선 권고서'**를 발부하고 이행 여부 점검

- **[심각] 단계** :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없거나**(1년 이상 방치), **민간 특화사업자**(앵커기업 등) **부도** 등으로 **사업 재개**가 **불가능**하여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조치) 본부(특구운영과)**에 **즉시 보고**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 해제' 또는 '구조고도화'** 검토 착수

3. 보고 체계

- 본 체크리스트 결과는 '**서식5 ③[현장점검 유형 3] 부진 특구 운영상황 조사**'의 **첨부 자료**로 **활용**

- 단, **'심각' 판정 시**에는 정기 보고와 별도로 **즉시 본부(특구운영과)와 협의**하여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 (특구명)
점검 일자	2026 년 월 일 (현장방문 / 서면검토)
점 검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입회자	(지자체) 소속/성명 : (특구 사업자) 성명 :
참여 전문가	1. 소속/성명 : (분야 :) 2. 소속/성명 : (분야 :)

2. 중점 점검 사항

※ 각 항목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확인 결과	비고 (특이사항)
① 장기 미활용 여부 • 특구 지정 후 또는 최근 **1년 이상** 규제 특례 활용 실적이 전무한가?	□ 예 (미활용) □ 아니오 (활용중)	(미활용 특례명 기재)
② 특례 적용의 적절성 •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자격요건) 및 구역 범위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위반	
③ 필수 이행조건 준수 • 특례 적용에 따른 부대 조건(보험 가입, 안전 조치 등)을 이행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④ 사업 추진의 지속성 • 주요 특화사업(시설 운영 등)이 중단 없이 정상 가동 중인가? ※ 예산 부족, 민원 등으로 6개월 이상 중단 시 '중단' 체크	□ 정상 가동 □ 지연/중단	(중단 사유)
⑤ 재원 조달 이행 • 당초 계획된 연차별 투자금액(지방비, 민간자본)이 집행되었는가?	□ 이행 □ 미이행	(미집행액)
⑥ 핵심 민간 특화사업자 투자 이행 •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특화사업자(앵커기업 등)가 협약된 투자(건설, R&D)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단순 영업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집행 및 사업 추진 여부 확인	□ 정상 이행 □ 지연/철회	(지연 사유)
⑦ 목적 달성 불가능 • 상기 사유(특례 미활용, 재원 미확보 등)로 인해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직권해제 검토]**
⑧ 심각한 부작용 • 특화사업 추진으로 환경 오염,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가?	□ 발생 □ 미발생	

3. 종합 판정 및 조치 의견

판 정	조치 기준 (가이드라인)	해당
정 상	• 특례 활용 및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
주 의 (시정권고)	• 일부 지연이나 미흡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 회복 가능**함 ⇒ **[조치]** 지자체에 자체 시정 계획 수립 및 이행 권고	□
심 각 (해제검토)	• **1년 이상 특례 미활용** 또는 **사업 중단**으로 목적 달성 곤란 • 과년도 성과평가 **연속 '부진(하위 5%)'** 등급 해당 ⇒ **[조치]** 본부 보고 후 **'구조고도화'** 또는 **'지정 해제'** 절차 착수	□

[종합 의견(담당자 작성)]

2026년 0월 0일

점 검 자 : (서명)

※ 작성 예시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충청북도 ○○군*** *(특구명)* ***충북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
점검 일자	*2026 년 5 월 12 일 (* ■ ***현장방문*** */ □ 서면검토)*
점 검 자	*소속 :* ***충북지방중기청*** *직위 :* ***주무관*** *성명 :* ***박중기****(인)*
입회자	*(지자체) 소속/성명 :* ***○○군청 경제과 특구팀장 최지방*** *(특구 사업자) 성명 :* ***(주)바이오○○ 공장장 정현장***
참여 전문가	*1. 소속/성명 :* ***A 대학 김교수*** *(분야 :* ***바이오 산업****)* *2. 소속/성명 :* ***B 법무법인 이변호사*** *(분야 :* ***규제 법률****)*

2. 중점 점검 사항

※ 각 항목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점검 항목	확인 결과	비고 (특이사항)
① 장기 미활용 여부 • 특구 지정 후 또는 최근 **1 년 이상** 규제 특례 활용 실적이 전무한가?	■ ***예 (미활용)*** □ *아니오 (활용중)*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 조례 미제정으로 14 개월째 미활용*
② 특례 적용의 적절성 •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자격요건) 및 구역 범위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 ***준수*** □ *위반*	*농지법 특례 필지 적정함*
③ 필수 이행조건 준수 • 특례 적용에 따른 부대 조건(보험 가입, 안전 조치 등)을 이행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완료*
④ 사업 추진의 지속성 • 주요 특화사업(시설 운영 등)이 중단 없이 정상 가동 중인가? ※ 예산 부족, 민원 등으로 6 개월 이상 중단 시 '중단' 체크	■ ***정상 가동*** □ *지연/중단*	*가공센터 공정률 45%(계획 대비 정상)*

점검 항목	확인 결과	비고 (특이사항)
⑤ 재원 조달 이행 • 당초 계획된 연차별 투자금액(지방비, 민간자본)이 집행되었는가?	■ *이행* □ *미이행*	*'26 년도 군비 15 억원 확보 완료*
⑥ 핵심 민간 특화사업자 투자 이행 •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특화사업자(앵커기업 등)가 협약된 투자(건설, R&D)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단순 영업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집행 및 사업 추진 여부 확인	■ *정상 이행* □ *지연/철회*	*앵커기업((주)바이오) 1 차 설비 투자금(10 억원) 집행 확인*
⑦ 목적 달성 불가능 • 상기 사유(특례 미활용, 재원 미확보 등)로 인해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앵커기업 투자가 활발하여 목적 달성 가능함*
⑧ 심각한 부작용 • 특화사업 추진으로 환경 오염,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가?	□ *발생* ■ *미발생*	

3. 종합 판정 및 조치 의견

판 정	조치 기준 (가이드라인)	해당
정 상	• 특례 활용 및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	□
주 의 (시정권고)	• 일부 지연이나 미흡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 회복 가능**함 ⇒ **[조치]** 지자체에 자체 시정 계획 수립 및 이행 권고	■
심 각 (해제검토)	• **1 년 이상 특례 미활용** 또는 **사업 중단**으로 목적 달성 곤란 • 과년도 성과평가 **연속 '부진(하위 5%)'** 등급 해당 ⇒ **[조치]** 본부 보고 후 **'구조고도화'** 또는 **'지정 해제'** 절차 착수	□

[종합 의견(담당자 작성)]

○ *앵커기업의 투자 이행 및 가공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특례**가 **지자체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해 **1년 이상 미활용** 상태임*
○ *이는 '주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지자체에 **3개월 내 조례 제정 및 특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함.*

2026년 5월 00일

점 검 자 : 박OO (서명)

(8) [지방중기청] 시정 및 개선 권고서(행정지도용)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정 및 개선 권고서

「지역특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귀 기관이 관할하는 특구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니 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 (특구명)
점검 일자	2026. . . (현장방문)
점 검 자	○○지방중기청 OOO 과 (직위) (성명)

2. 지적 사항 (운영 미흡 내역)

※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규제특례 미활용,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 구체적 사실 기재

연번	지적 내용(현장 확인 사항)
1	
2	
3	

3. 권고 조치 사항

※ 위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이행해야 할 조치 내용

연번	조치 요구 사항	이행 기한
1		2026. . . (개월 내)
2		2026. . . (개월 내)
3		2026. . . (개월 내)

4. 행정 예고 (미이행 시 불이익)

불이익 고지 내용
위 권고 사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

※ 작성 예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정 및 개선 권고서

「지역특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귀 기관이 관할하는 특구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니 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부산광역시 ○○구 /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
점검 일자	*2026. 5. 00. (현장방문)*
점 검 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OOO 과 주무관 최 OO*

2. 지적 사항 (운영 미흡 내역)

※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규제특례 미활용,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 구체적 사실 기재

연번	지적 내용(현장 확인 사항)
1	*[규제특례 미활용]* •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해 승인받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가 특구 지정 후 현재까지 1년 2개월간 활용 실적이 전무(0건)함.* • *미활용 사유 확인 결과, 특례 적용 구역 및 기준을 정하는 지자체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음.*
2	*[운영 체계(거버넌스) 미작동]* • *「지역특구법」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최근 1년간 미개최되어, 규제 이행 점검 등 자체 관리가 부재함* • *또한, 특구 내 특화사업자(수혜기업) 관리 대장이 현행화되지 않아, 정확한 기업 현황 및 성과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임*
3	*[재원 조달 지연]* •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계획된 특화사업비(지방비 매칭분 5억원)가 미확보되어, 핵심 시설인 '바이오 가공센터' 착공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음.*

3. 권고 조치 사항

※ 위 지적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이행해야 할 조치 내용

연번	조치 요구 사항	이행 기한
1	• *「옥외광고물법」 특례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특화 거리 조성 및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미이행 시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간주하여 특례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	*2026. 8. 14. (3개월 내)*
2	• *조속히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회의록을 제출할 것* • *특구 내 입주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그 명단을 보고할 것*	*2026. 6. 14. (1개월 내)*
3	•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예산 편성 내역서(의결서) 및 공사 착공 계획을 제출할 것.*	*2026. 7. 14. (2개월 내)*

4. 행정 예고 (미이행 시 불이익)

불이익 고지 내용
위 권고 사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

(9) [지방중기청] 특구 운영성과 검증 및 검토의견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검증 및 검토의견서

1. 검토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 (특구명)
검토 기간	2026. . . ~ 2026. . .
검토 방법	□ 서면 교차 검증 (필수) □ 현장 실사 (필요시)
검 토 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OO 과 (직위) (성명) (인)

2. 서면 데이터 교차 검증 결과

※ 성과보고서(텍스트), 총괄표(숫자), 증빙자료(문서) 간의 일치 여부 및 정합성 점검

점검 항목	지자체 제출 실적	검증 결과 (지방중기청)	불일치/미인정 사유
재원 조달 (투자액)	(총괄표 상 총액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억원)	(증빙이 누락되었거나, 투자계획 단계로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 등 미인정 사유 기재)
기업 유치 (기업 수)	(총괄표 상 총수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개 사)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특구 구역 외이거나,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 제외 사유 기재)
고 용 (인원 수)	(총괄표 상 인원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명)	(4대보험 미가입자, 단순 일용직 등 상용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인원 제외 사유 기재)
매 출 (매출액)	(총괄표 상 금액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억 원)	(특구 사업과 무관한 매출이 포함되었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금액 기재)
규제 특례 (활용 건수)	(총괄표 상 건수 기재)	□ 일치(인정) □ 불일치 (건)	(단순 신고 사항을 특례 활용으로 오인했거나, 특구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활용 건수 제외)

3. 현장 실사 결과(해당 시)

※ 서면만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허위 실적이 의심되어 현장을 방문한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방문 일자	2026. . .
방문 장소	(방문 기업명 또는 시설명)
실사 목적	(서면 검증 시 의문점, 실적 급증/급감 원인 파악, 주요 시설 가동 여부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유 기재)
확인 내용	(현장에서 담당자 면담, 시설 확인, 장부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 및 최종 판단 내용 기술)

4. 지방중기청 종합 검토 의견

※ 정량적 수치 외에 지자체의 노력도, 사업의 난이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실적의 신뢰성	• 제출된 증빙자료와 총괄표 수치 간의 정합성 여부 및 오류 수정(보정)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 기술 (예: 단순 집계 오류인지, 고의적 부풀리기인지 등에 대한 판단 포함)
사업 성과 및 노력도	• 전년 대비 실적 증감의 원인(외부 요인, 내부 노력 등) 분석 및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추진 의지, 민간 투자 유치 노력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기술
종합 제언	• 위 검증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특구의 운영 성과에 대한 총평 및 향후 평가(본부 평가위) 시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 제언

위와 같이 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

※ 작성 예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검증 및 검토의견서

1. 검토 개요

구 분	내 용
대상 특구	*(지자체명) 강원 ○○군* *(특구명) 강원 ○○ 스마트 바이오 융합 특구*
검토 기간	*2026. 4. 1. ~ 2026. 4. 25.*
검토 방법	■ *서면 교차 검증 (필수)* ■ *현장 실사 (필요시)*
검 토 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OOO과 사무관 안OO (인)*

2. 서면 데이터 교차 검증 결과

※ 성과보고서(텍스트), 총괄표(숫자), 증빙자료(문서) 간의 일치 여부 및 정합성 점검

점검 항목	지자체 제출 실적	검증 결과 (지방중기청)	불일치/미인정 사유
재원 조달 (투자액)	*150 억 원*	□ *일치(인정)* ■ *불일치 (120 억 원)*	*[30 억원 미인정]* *MOU 단계의 투자예정 금액을 집행 실적으로 오기재함*
기업 유치 (기업 수)	*5 개 사*	■ *일치(인정)* □ *불일치 (개사)*	*사업자등록증 및 입주 계약서 확인 완료*
고 용 (인원 수)	*50 명*	□ *일치(인정)* ■ *불일치 (45 명)*	*[5 명 미인정]* *일용직 근로자 및 단순 체험학습 보조인력 제외*
매 출 (매출액)	*200 억 원*	■ *일치(인정)* □ *불일치 (억원)*	*재무제표 및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 대조 완료*
규제 특례 (활용 건수)	*5 건*	□ *일치(인정)* ■ *불일치 (4 건)*	*[1 건 미인정]* *특구사업과 무관한 일반 사무용품 특허 우선심사 건 제외*

3. 현장 실사 결과(해당 시)

※ 서면만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허위 실적이 의심되어 현장을 방문한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방문 일자	*2026. 4. 20.*
방문 장소	*(주)바이오○○ 제 2 공장*
실사 목적	• *서면상 확인된 매출 급증(200%)의 원인 파악 및 실제 공장 가동 여부 확인*
확인 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신규 생산라인이 24 시간 풀가동 중이며 수출 물량 급증이 매출 상승의 주원인임을 확인함 (허위 매출 아님)*

4. 지방중기청 종합 검토 의견

※ 정량적 수치 외에 지자체의 노력도, 사업의 난이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의견

구 분	검 토 의 견
실적의 신뢰성	•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실적 중 미확정된 MOU 금액(30 억)을 포함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므로, 이를 제외한 120 억 원으로 실적을 수정하여 평가해야 함* • *규제특례 활용 건수도 단순 특허 등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특화사업 연관성이 입증된 4 건만 인정함이 타당함*
사업 성과 및 노력도	• *일부 통계 오류는 있었으나, 앵커기업의 수출 성과(500 만 불)는 특구 지정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임* • *특히, 지자체가 1 년간 '찾아가는 규제 애로 상담실'을 운영하며 기업 밀착 지원을 한 노력은 정성평가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함*
종합 제언	• *데이터 검증 결과 일부 감점 요인(통계 오류)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으므로 '우수' 등급 이상의 잠재력이 있는 특구로 판단됨*

위와 같이 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에 대한 검증 결과 및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

(10) (지자체) 특구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양식(부진 특구용)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고도화 계획(안)

(지자체명) ○ ○ 시 · 군 · 구

1. 특구 일반 현황

□ 특구 개요

○ 특 구 명 : ○○특구

○ 지정일자 : 0000. 00. 00. (최초지정)

○ 위 치 : ○○시·도 ○○시·군·구 ○○동 일원 (면적: 000,000㎡)

○ 총사업비 : 000억 원 (국비 00, 지방비 00, 민자 00)

○ 주요사업 : (기존 특화사업 내용 2~3줄 요약)

□ 구조고도화 추진 배경

○ 추진 사유 : (성과평가 결과 등급, 지방중기청 현장 점검 결과 등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행정적 배경 기술)

○ 목 적 : (구조고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및 정상화 방향 제시)

2. 부진 원인 정밀 진단

※ 외부 환경 탓보다는 내부 역량, 사업 모델의 한계점 위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기술

□ 대내외 환경 분석

○ 시장 환경 : (해당 산업의 성장성, 경쟁 상황 등 시장 트렌드 분석)

○ 지역 여건 : (인구 구조, 기반 시설, 배후 수요 등 지역적 한계점 기술)

□ 내부 역량 및 사업 구조적 문제점(핵심)

○ 민간투자 부재 : (당초 계획 대비 민간 자본 유치 실적과 실패 원인 분석)

○ 비즈니스 모델(BM) 단순성 : (수익 창출 구조의 한계 및 가치사슬 단절 여부 진단)

○ 규제특례 활용 미흡 : (특구 지정 목적과 규제특례 간의 연계성 부족 및 장기 미활용 사유)

○ 거버넌스 미작동 : (지자체 전담 조직의 전문성, 협의회 운영 실태 등 추진 체계 문제점)

3. 구조고도화 추진 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동력을 심는 구체적 전략 제시

□ 기본 방향

○ 구조조정 : (성과가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특화사업 및 특례의 정리 방향)

○ 민간전환 : (관 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방침)

○ BM개편 : (기존 사업 모델을 고부가가치형으로 개편하는 방향)

□ 세부 추진 계획

① 부실 사업 및 특례 구조조정
- 사업 축소 : (폐지 또는 축소할 세부 사업명과 예산 절감 내역)
- 특례 반납 : (활용 실익이 없어 자진 삭제, 반납할 규제특례 조항)

② 민간 앵커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 유치 전략 : (타겟 기업 선정 및 유치 활동 계획)
- 투자 계획 : (유치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시기, 대상 사업)

③ 규제특례 재설계 및 활용 제고
- 신규 발굴 : (새로운 BM 수행에 필수적인 신규 특례 발굴 내역)
- 활용 계획 : (조례 제정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계획)

4. 연차별 이행 로드맵

구분	00 년 하반기 (기반 재정비)	00 년 (사업 본격화)	00 년 (성과 창출)
제도	• (계획 변경, 조례 제정 등) •	• •	• •
사업	• (구조조정, 협약 체결 등) •	• •	• •

5. 기대 효과 및 이행 확약

□ 기대 효과

○ (구조고도화 추진에 따른 정량적 및 정성적 기대 효과 기술)

□ 지자체장 이행 확약

본 구조고도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에 따른 **'직권 지정 해제'**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 작성 예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구조고도화 계획(안)

(지자체명) *전북특별자치도 ○ ○ 군*

1. 특구 일반 현황

□ 특구 개요

○ 특 구 명 : *전남 ○○ 친환경 유기농 & 힐링 특구*

○ 지정일자 : *2017. 4. 20. (최초지정)*

○ 위 치 : *전북 ○○군 △△읍 □□리 일원 (면적: 600,000㎡)*

○ 총사업비 : *350억 원 (국비 80, 지방비 200, 민자 70)*

○ 주요사업 : *유기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친환경 농업 체험장 운영,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 구조고도화 추진 배경

○ 추진 사유 : *2024~2025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연속 '부진(하위 5%)' 등급을 받았으며, 2026년 상반기 지방중기청 현장 점검에서 '심각(목적 달성 곤란)' 판정을 받음*

○ 목 적 : *침체된 1차 산업 위주의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체류형 웰니스 관광' 모델로 전면 개편하여 특구 지정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

2. 부진 원인 정밀 진단

※ 외부 환경 탓보다는 내부 역량, 사업 모델의 한계점 위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기술

□ 대내외 환경 분석

○ 시장 환경 : *단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수요는 정체되었으나, '펫 캉스(반려동물 동반 여행)' 및 '치유 농업' 등 체험형 관광 수요는 급증 추세임*

○ 지역 여건 :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했으나 숙박·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이 짧음*

□ 내부 역량 및 사업 구조적 문제점(핵심)

○ 민간 투자 부재 : *당초 계획된 리조트 유치(민자 50억원)에 실패하여, 군비로 조성한 '친환경 체험장'이 수익 모델 없이 방치됨*

○ 비즈니스 모델(BM) 단순성 : *농산물 단순 포장·판매에 그쳐 부가가치가 낮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성이 큼*

○ 규제특례 활용 미흡 : *「도로교통법」(축제 시 차량통제) 및 「공연법」 특례를 지정받았으나, 축제 폐지로 인해 최근 3년간 활용 실적이 전무(0건)하여 특구 지정의 실익이 없음*

○ 거버넌스 미작동 : *특구 전담 부서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결여됨*

3. 구조고도화 추진 전략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동력을 심는 구체적 전략 제시

□ 기본 방향

○ 구조조정 : *성과 없는 1회성 축제 사업 폐지 및 미활용 '행사성 특례' 전량 반납*

○ 민간전환 : *방치된 체험장의 운영권을 민간 전문기업(앵커)에 장기 위탁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함*

○ BM개편 : *단순 판매 중심에서 반려동물 동반 힐링 스테이(숙박+식음+체험)로 고도화*

□ 세부 추진 계획

① 부실 사업 및 특례 구조조정

- 사업 축소 : *방문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된 '유기농 주말 장터' 및 '봄꽃 축제' 사업 폐지(연간 예산 3억원 절감)*

- 특례 반납 : *축제 폐지에 따라 실익이 없어진 「도로교통법」 및 「공연법」 관련 규제특례 조항 삭제*

② 민간 앵커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 유치 전략 : *국내 유수의 펫 리조트 운영사인 '(주)OO스테이'를 앵커기업으로 유치 확정(투자협약 체결 완료).*

- 투자 계획 : *유휴 부지인 체험장 내에 프리미엄 글램핑장 및 펫 카페 조성을 위해 앵커기업이 150억원을 직접 투자하여 2027년까지 완공*

③ 규제특례 재설계 및 활용 제고

- 신규 발굴

(1) (시설) 펫 글램핑장의 특화 시설(반려동물 전용 수영장, 울타리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5조) 적용

※(내용)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하여, 펫 프렌들리 맞춤형 기준 도입

(2) (홍보) 리조트 내 디지털 사이니지 및 지주 간판 설치 허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4조) 적용

(3) [브랜드] '힐링푸드' 및 '펫푸드' 브랜드의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한 「특허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55조) 적용 (우선심사 지원).

- 활용 계획 : *특구계획 변경 승인 즉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시설기준 조례' 제정 및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4. 연차별 이행 로드맵

구분	2026 년 하반기 (기반 재정비)	2027 년 (사업 본격화)	2028 년 (성과 창출)
제도	• *특구계획 변경 신청 (행사 특례 삭제 → 시설·광고 특례 추가)*	• *관광휴양사업 조례 제정* • *광고물 조례 제정*	• *특허 우선심사 5 건 지원* • *규제샌드박스 연계 추진*
사업	• *체험장 위탁 계약 체결* • *(주)OO 스테이 착공*	• *글램핑장 시범 운영* • *펫푸드 신제품 출시*	• *연 방문객 30 만 명* • *민간 매출 200 억원 달성*

5. 기대 효과 및 이행 확약

□ 기대 효과

○ *민간 자본 150억 원 유입을 통해 방치된 공공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특화사업(숙박+식음) 연계 매출 연 200억 원 달성 및 지역 청년 등 상시 일자리 40개 창출*

□ 지자체장 이행 확약

본 구조고도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에 따른 '**직권 지정 해제**'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6. 6. .

○○군수 (인)